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검 토 보 고

〈 방송·IPTV, OTT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43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총괄 검토 ·····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 4

2. 제정법의 구성체계 ····· 17

3. 총괄 검토의견 ····· 23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35

Ⅳ. 주요 내용별 검토 ····· 47

1. **제명, 목적, 정의**(제1조 및 제2조) ····· 47

2. **제1장 총칙**: 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적용범위,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3조부터 제8조까지) ····· 81

3. **제2장 기본사항 (1)**: 소유제한 규제,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90

4. **제2장 기본사항 (2)**: 폐업·휴업 신고, 심의, 자료제출, 재산상황 공표 등(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121

5.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 (1)**: 공영방송, 허가·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대표자·보도책임자 임명 등(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134

6.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 (2)**: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편성 규제, 광고(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156

7. **제4장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1)**: 승인·신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편성 규제, 협찬·협찬고지 등(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 174

8. **제4장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2)**: 보편적 시청권, 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 승인취소, 과징금 등(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 199

9. **제5장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허가·승인, 지역사업권, 기술기준, 기술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채널 구성, 재송신 등(제47조부터 제60조까지) ····· 217

10. **제6장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 신고, 투명성 확보,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 261

11. **제7장 시청자의 권익증진**: 책무, 시청자위원회, 사업자의 의무, 장애인 시청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제64조부터 제73조까지) ····· 273

12. **제8장 공정경쟁의 촉진**: 경쟁상황 평가,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등(제74조부터 제86조까지) ····· 286

13. **제9장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지원**: 제작·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협회 등(제87조부터 제96조까지) ····· 309

14. **제10장 보칙**: 시정명령, 제재조치 등(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 320

15. **제11장 벌칙**: 벌칙, 과태료, 과징금 등(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 329

16.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경과조치 등 ····· 343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6. 18.

다. 회 부 일 : 2026. 7.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케이블·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을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영상·음성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영역·시장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등으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 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소유제한,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 제한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성 및 공적 책임에 관한 심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허가·승인, 변경허가, 재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대표자·보도책임자 임명절차 및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관한 승인·신고 제도, 편성·광고·협찬 규율, 보편적 시청권 보장 체계 등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허가·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보유 플랫폼의 기술기준, 채널 구성·운용, 재송신, 설비 미보유 플랫폼·공유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부터 제63조까지).

아.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재난정보 전파, 장애인 시청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3조까지).

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체계를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6조까지).

차.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해외진출·전문인력 양성·지역 및 중소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및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부터 제96조까지).

카.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종전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유지, 벌칙의 경과조치, 지역사업권의 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가. 현행 방송관계법 체계

○ 방송관계법은 종전 4개 법률(舊방송법, 舊종합유선방송법, 舊유선방송관리법, 舊한국방송공사법)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에 4개 법률을 통합한 「방송법」이 제정[1]되어 그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통합 방송법 제정과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정[2]되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이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되어 EBS가 출범하였고, 「방송문화진흥회법」도 전부개정[3]되었음.

○ 이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8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함)이 제정[4]되었음.

---

1) 법률 제6139호, 2000.3.13. 시행
2) 법률 제6136호, 2000.3.13. 시행
3) 법률 제6137호, 2000.3.13. 시행
4) 법률 제8849호, 2008.4.18. 시행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과 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거하고자 2010년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5]되었음.

○ 종전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를 규율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및 「방송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를 재정비하여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6]되었음.

○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및 복수 미디어렙 제도 도입에 따라 열악한 미디어환경 속에서 존립 위기를 맞은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7]되었음.

○ 이로써 현행 방송관계법은 방송 관련 기본법으로서 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방송법」**,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문화방송(MBC) 및 그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규율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IPTV법」**, 방송통신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

5) 법률 제10165호, 2010.9.23. 시행
6) 법률 제11373호, 2012.5.23. 시행
7) 법률 제12743호, 2014.12.4. 시행

법」,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제정안 및 「한국방송공사법안」은 「방송법」 및 「IPTV법」을 폐지하여 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하고, KBS 관련 사항은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여 이동하는 등 방송관계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방송관계법 체계 개편 방향 >

종합	공영방송 관련	제도 관련
「방송법」 「IPTV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	⇩
종합	**공영방송 관련**	**제도 관련**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나. 방송통신 관련 거버넌스 연혁

○ 제정법률안은 「방송법」과 같이 법률의 소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분류하고 있는바, 방송통신 관련 거버넌스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거 방송부문은 「언론기본법」[8]에 근거하여 1981년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및 1991년에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근거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신부문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었음.

○ 2000년대 DMB, IPTV 등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장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산업 관련 정책은 '지식경제부'로 이전되었음.

○ 그러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기능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도록 하였고, 규제 기능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켰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고 방송통신 융

8)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제정된 「방송법」이 방송위원회 근거 법률로 작동해왔음.

합이 보다 진전된 매체인 SO·위성방송·IPTV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지상파·보도PP 등 산업성보다는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영역과 방송통신 사후규제 업무는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유지하였음.

○ 이러한 체제는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지난 2025년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료방송 및 방송 진흥업무를 이관받게 되었음.

< 역대 방송통신 관련 거버넌스 연혁 >

<table>
<tr><th>연도
소관</th><th>~2008</th><th>2008~2013</th><th>2013~2017</th><th>2017~2025</th><th>2025~현재</th></tr>
<tr><td>방송 규제</td><td rowspan="2">방송위원회</td><td rowspan="2">방송통신위원회</td><td>방송통신위원회</td><td>방송통신위원회</td><td rowspan="2">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td></tr>
<tr><td>유료방송,
방송 진흥</td><td rowspan="2">미래창조과학부</td><td rowspan="2">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r><td>정보통신</td><td>정보통신부</td><td>지식경제부</td><td>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tr>
</table>

주: 정보통신 관련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임

다. 미디어 통합 법제 필요성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방송관계법 체계로는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담론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03~2005년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9], 2007~2008년 IPTV[10], 2013년 VOD, 2016년 OTT[11] 등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에 속하는 서비스의 등장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규범 체계 및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여주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송망(방송망·통신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소관을 분리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최근 OTT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미디어 소비패턴 변화는 우리나라 방송통신미디어 법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촉진시키고 있음.

9) 2005년 위성DMB 및 지상파DMB 서비스 실시
10) 2008년 KT, 2009년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 실시
11) 2016년 넷플릭스 국내 출시, 2019년 웨이브(Wavve) 서비스 개시 등

○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미통위, 2026.6.)에 따르면, 2025년도 방송사업 매출은 IPTV와 콘텐츠사업자(CP)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0.8% 하락하였고, 지상파·SO·위성방송사업자 모두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2016~2025년) 매체별 방송사업매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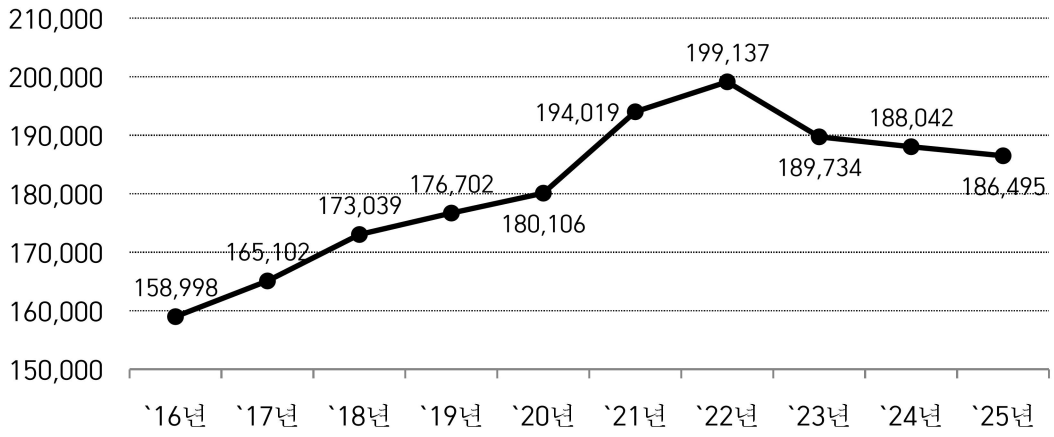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지상파	39,987	36,837	37,965	35,168	35,665	39,882	41,551	37,309	35,308	33,162	△2,146	△6.1%	△2.1%
SO	21692	21,307	20,898	20,227	19,328	18,542	18,037	17,335	16,835	16,399	△436	△2.6%	△3.1%
위성	5,656	5,754	5,551	5,485	5,328	5,210	5,058	4,920	4,742	4,470	△272	△57%	△2.6%
IPTV	24,277	29,251	34,358	38,566	42,836	46,368	48,945	50,072	50,783	50,832	49	0.1%	8.6%
PP	63,801	66,396	68,402	70,849	70,725	75,405	76,268	71,087	71,081	69,417	△1,664	△2.3%	0.9%
CP	3,482	5,442	5,761	6,311	6,148	8,563	9,230	8,980	9,263	12,184	2,921	31.5%	14.9%
지상파DMB	103	114	104	95	76	49	48	31	30	31	1	3.3%	△125%
계	158,998	165,102	173,039	176,702	180,106	194,019	199,137	189,734	188,042	186,495	△1,547	△0.8%	1.8%

자료: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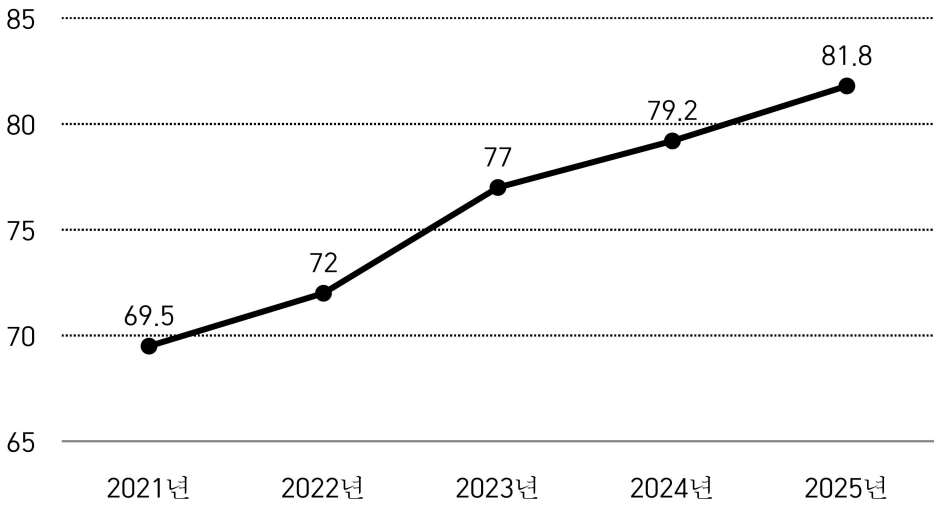
- 방송사업매출 총액을 보더라도, 202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3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매년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2016～2025년) 방송사업매출 합계 (단위: 억원) >



○ 이러한 상황에서 OTT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로서 사회적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21～2025년) OTT 이용률 (단위: %) >



자료: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5.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OTT가 방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의 사각지대와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심의규정에 의한 방미심위의 심의를 통해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고,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진입·소유·편성·광고 규제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OTT는 불법·유해정보 중심의 통신심의만 받고, 자율등급부여 사업자로[12]서 최소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받으며, 현행법상 신고사업자[13]에 불과하고, 편성·광고 측면에서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함.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OTT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하위 범주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심의의 미비와 자체등급분류로 인해 OTT를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고, 편성·광고 규제 측면에서도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불평등으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에 비해 온라인광고시장의 광고시장 내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14]에 따르면 '방송광고비'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2025년 기준 2.8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온라인광고비' 규모(약 10.7조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광고시장 내 방송광고비 비중도 16% 수준임.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체 유형별 광고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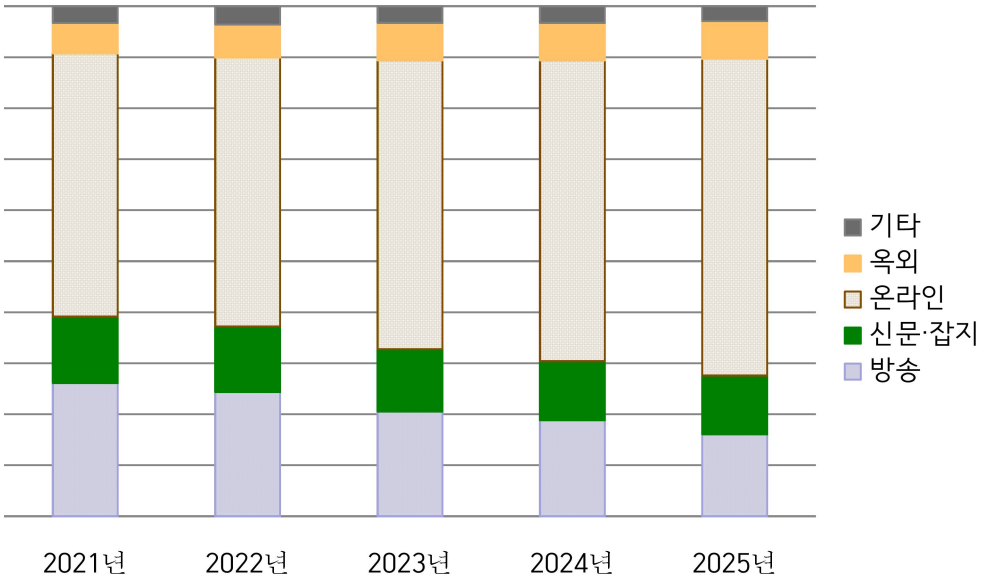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연도 / 매체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치)
방송	40,531	40,212	33,899	32,191	27,744
신문·잡지	20,208	21,277	20,260	19,875	19,890
온라인	80,036	87,062	93,653	101,011	107,204
PC	17,797	19,027	20,766	23,112	24,078
스마트폰	62,239	68,035	72,887	77,899	83,126
옥외	9,302	10,693	12,208	12,590	12,852
기타	5,097	5,958	5,390	5,595	5,027
총광고비	155,174	165,203	165,410	171,263	172,717

자료: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공동으로 발행한 국가승인통계로, 2026.1. 발행되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체 유형별 광고비 비중>



자료: 2025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라. 해외 미디어 법제 동향

○ **(유럽연합)** EU는 20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제정하여 'VOD[15] 제공 플랫폼'을 미디어 규율 범위에 포섭하였고, 2018년 지침 개정을 통해 편성권이 없는 'VSP[16]'도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음.

○ **(독일)** 2020년 종전의 「방송 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StV)을 폐지하고 「방송·텔레미디어 국가협약」을 거쳐 「미디어 국가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을 제정하였음.[17]

- MStV는 방송과 '방송유사 텔레미디어(VOD)', '미디어 중개자(VSP)' 등 신유형 미디어를 포섭하며, 청소년 보호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프랑스)** 방송·플랫폼 합의제 기관 ARCOM을 중심으로, 2021년 「커뮤니케이션자유법」을 개정하여 SMAD[18]와 VSP를 기존 방송과 함께 규율 대상으로 편입시켰음.

- OTT를 대상으로 유럽산 작품 및 프랑스어 작품 편성 의무, 제작 투자 의무, 현저성 보장 조치를 부과하는 등 자국 콘텐츠 보호 정책이 특징임.

---

15) 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예: 넷플릭스)
16) Video Sharing Platform,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예: 유튜브)
17) 독일은 기본법에 따라 방송·문화 정책이 각 주(州)의 권한에 속하며, 연방 차원의 통일적 규제를 위해 각 주가 '국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18)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예: 넷플릭스)

○ **(영국)** 방송통신 관련 합의제 기관인 Ofcom을 중심으로 2024년 「미디어법(Media Act)」을 제정하여 방송과 ODPS[19] 등 신규 미디어서비스를 규율하고 있으며, VSP는 영향력 비례 규제를 위해 「온라인 안전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 특히, OTT를 전통적 방송과 구별되는 시청각서비스로 규정하면서도, 공공적 영향력이 큰 서비스에 대하여는 방송과 유사한 공적 책임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특징임.

○ **(캐나다)** 방송통신 합의제 기관 CRTC를 중심으로 2023년 기존 방송법을 개정함으로써 OTT 등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를 편입시킨 「온라인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을 제정하였음.

- OTT를 방송사업의 하위 범주인 '온라인사업'으로 편입하여 등록제를 적용하고, 자국 콘텐츠 제작 기여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연방 방송통신 합의제 기관 FCC가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등을 통해 방송산업을 규율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OTT와 다채널방송의 대체성 및 코드커팅 경향을 반영하여 실시간 OTT 등을 다채널방송과 동일시장에 포함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19) On Demand Programme Service,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예: 넷플릭스)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임.

○ 제정안 제1장은 **총칙**으로 주요 정의와 공적 책임, 법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2장은 **기본사항**으로서 소유규제, 결격사유, 심의 등 법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군별 제도**를 규율하고,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각각 **시청자 보호, 공정경쟁 촉진, 발전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며, 마지막으로 제10장과 제11장은 각각 **보칙 및 벌칙**에 해당함.

○ 특히, 제정안은 기존 방송과 IPTV, OTT를 아우른 모든 종류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①공공영역, ②콘텐츠서비스, ③플랫폼서비스(설비 보유·미보유)로 분류하고, 제3장부터 제6장까지에 각각 해당 서비스군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방송법」에서는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승인·등록·신고(재허가·재승인, 취소,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 포함), 편성 및 광고 규제가 각 제도별로 하나의 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정안은 각 장마다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업자군별로 규제를 선별적·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구 분	「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제3장 공공영역 서비스	제4장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서비스	
				제5장 설비 보유	제6장 설비 미보유
규율 대상	모든 방송사업자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실시간(PP) 비실시간(VOD) 이용자제작	종합유선(SO) 위성방송 IPTV 등	OTT 등
허가·승인·등록·신고	제9조	제20조	제31조, 제43조	제47조	제61조
재허가·재승인	제17조	제23조	제34조	제49조	-
허가·승인·등록·신고의 취소	제18조	제24조	제45조	제50조	-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	제15조, 제15조의2	제21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제48조	-
편성 규제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29조	제35조	제58조	-
광고 규제	제73조	제30조	제36조	-	-

○ 이에 따라 유사한 규정이 제정안 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사업군별로 적용받는 제도를 구분하여 법규에 접근하기 용이해지고, 하나의 장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제정안의 조문에 대응되는 「방송법」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 장별·조항별 대응되는 「방송법」 조항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조 제목	방송법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시청자의 권익증진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7조	적용범위		제7조	적용범위
	제8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
제2장 시청각 미디어의 기본사항	제9조	소유제한 등	제2장 방송 사업자등	제8조	소유제한 등
	제10조	결격사유		제13조	결격사유
	제11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2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제5장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13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	제3장 소속 위원회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14조	심의규정		제33조	심의규정
	제15조	자체심의	제6장	제86조	자체심의
	제16조①②	자료제출	제8장	제98조	자료제출
	제16조③	자료제출	제5장	제73조의2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17조	재산상황의 공표	제8장	제98조의2	재산상황의 공표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 미디어	제18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제19조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제2장	-	-
	제20조	허가·승인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21조	변경허가·변경승인 등		제15조	변경허가등
	제22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23조	재허가·재승인		제17조	재허가 등
	제24조	허가·승인의 취소 등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과징금 처분		제19조	과징금 처분
	제26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0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7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8조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장	제4조의2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29조	편성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30조	광고		제73조	방송광고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조 제목	방송법		조 제목
제4장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서비스	제31조	승인·신고	제2장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32조	변경승인·변경신고		제15조	변경허가등
	제33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34조	재승인 등		제17조	재허가 등
	제35조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등	제5장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36조	시청각미디어광고 등		제73조	방송광고등
	제37조	협찬		제74조	협찬고지
	제38조	협찬고지			
	제39조	보편적 시청권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40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41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42조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공내용의 기록·보존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제43조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신고		-	-
	제44조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책무	제2장	-	-
	제45조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제46조	과징금		제19조	과징금 처분
제5장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서비스	제47조	허가·승인 등	제2장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48조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 등		제15조	변경허가등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49조	재허가 등		제17조	재허가 등
	제5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제51조	지역사업권		제12조	지역사업권
	제52조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기술기준	제5장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5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2장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54조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9조의4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55조	심사기준·절차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56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5장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57조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약관 등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58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59조	재송신		제78조	재송신
	제60조	외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조 제목	방송법		조 제목
제6장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서비스	제61조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제2장	-	-
	제62조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등		-	-
	제63조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	-
제7장 시청자의 권익증진	제64조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책무	제6장	-	-
	제6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장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66조	시청자위원회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	시청자위원회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67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의무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68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69조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		-	-
	제70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재난정보의 전파		-	-
	제71조	장애인 시청지원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72조	시청자 역량강화 및 시청각미디어 교육의 지원	제5장	-	-
	제73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장 공정경쟁의 촉진	제74조	공정경쟁의 촉진	제6장	-	-
	제75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5조의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76조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공급	제3장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7조	금지행위	제5장	제85조의2	금지행위
	제78조	손해배상		-	-
	제79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0조	조정의 개시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91조	조정의 개시
	제81조	합의 권고		제91조의2	합의 권고
	제8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83조	조정절차		제91조의4	조정절차
	제84조	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5	조정의 효력 등
	제85조	조정의 종결		제91조의6	조정의 종결
	제86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		제91조의7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조 제목	방송법		조 제목
제9장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발전의 지원	제87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제88조	시청각프로그램 제작 지원		-	-
	제89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	-
	제90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1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제92조	세제지원		제92조의2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3조	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원		제92조의3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4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협력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95조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	-
	제96조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	-
제10장 보칙	제97조	시정명령등	제8장 보칙	제99조	시정명령등
	제98조	제재조치등		제100조	제재조치등
	제99조	청문		제101조	청문
	제100조	수수료		제102조	수수료
	제10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0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제103조	벌칙	제9장 벌칙	제105조	벌칙
	제104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제105조	양벌규정		제107조	양벌규정
	제106조	과태료		제108조	과태료
	제107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3. 총괄 검토의견

가. 방송 및 OTT 규제 수준에 관한 검토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OTT가 방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불공정 경쟁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심의의 미비와 자체등급분류 등으로 인해 OTT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고,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진입·소유·편성·광고 규제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OTT는 사후적 내용 심의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등급 분류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20]하며, 편성·광고 측면에서도 제한

---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함.

○ 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OTT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통적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및 OTT에 대한 규제 신설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방송에 관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할 때 소유규제, 편성·광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당초 규제가 도입되었던 취지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소유·겸영규제는 특정 자본의 매체 독점에 의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완화할 경우 방송의 독립, 공적 책임과 다양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편성·광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편성의 자유를 제고하고 방송광

---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시장 침체 속에서 방송사업자의 재무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광고 총량 확대 등에 따라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외주제작사 등 창작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와 시청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규제 완화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OTT에 대한 규제 신설 측면에서, 제정안은 OTT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심의규정 준수의무, 자료제출 의무 등을 도입하고 있는바,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송출되는 것으로서 엄격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반면, OTT는 이용자의 선택에 기반한 비용 지불과 사적 계약에 기반하는 역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에 대하여 전통적 방송에 부과되는 공적 책임, 심의 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특히 내용에 관한 사후 심의가 창작자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OT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

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글로벌 사업자에게 국내법 적용을 강제할 경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등 국제 통상 규범과의 충돌 및 통상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OTT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제정안에 따른 규제가 추가될 경우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을 초래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소지도 있음.

○ 따라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과 방송·OTT의 특성 및 통상 관련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TT 관련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해보면, 방송-OTT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 완화 및 OTT 규제 신설에 관하여는 미디어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다른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 「방송법」·「IPTV법」 및 '방송'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 내 '방송(사업자)'을 단순히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치환할 경우 개별 규정의 적용 대상 등 제도의 근본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야 함.

○ 따라서 해당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법률에 관한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개정대상 법률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을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전기통신으로 구분하고 있고, 방송통신콘텐츠·설비·기자재 등을 정의하며,[21] 방송통신의 진흥(제3장)과 기술기준

---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장), 재난방송(제6장)[22]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반영하여 체계 전반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4장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사업자, 홈쇼핑PP로부터 일정한 요율의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23] 제정안

---

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에 따른 사업자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을 재분류하고, 징수율 또한 이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을 규정하는 법률[24]로서,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의 정의 및 방송사업자 분류 체계를 차용하고 있고,[25]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에 대하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6]

- 제정안은 광고를 '시청각미디어광고'로 정의하고 있고, 방송광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방송광고에 대한 판매대행 제도를 유지하려는 경우 시청각미디어광고 중 방송광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종편PP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제정안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때, 방송광고판매대행 의무를 현행과 같이 종편PP에까지 적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정안에서 삭제한 '종합편성'의 정의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전파법**」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인 '무선국' 중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방송국'을 정의[27]하고, 지상파·위성방송사업 허가를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28] 종합

---

27) **「전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28)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선방송사업자(SO)와 전송망사업자(NO)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29]

제정안이 방송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송망사업자(NO)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무선국·방송국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는 OTT사업자가 포함되며, 같은 법에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30],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31], 장애인 이용 지원[32], 휴업·폐업 신고[33],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34] 등이

---

29) **「전파법」**
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3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은 OTT를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도(안 제61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의무(안 제62조), 불법 콘텐츠 유통방지 의무(안 제63조), 포괄적 자료제출의무(안 제16조), 폐업·휴업 신고(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OTT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OTT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35]를 규정하고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3)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

있는데, 이는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관한 사후 규제를 정하는 제정안 제62조 및 제63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을 이관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소관 법률 외에도 ①「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민투표법」 등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요구하는 법률, 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콘텐츠·미디어·언론 관련 법률, ③「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장애인 보호 관련 법률,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난·홍보영상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총 50개 이상 법률에서 「방송법」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 특정 방송사업자군(지상파, SO, 전광판방송사업자 등)이나 방송의 정의를 활용하여 규제·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범부처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제정안은 「방송법」과 「IPTV법」을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인 만큼, 이하에서는 제정 법률안을 「방송법」 및 「IPTV법」 조항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중심으로 조문별로 비교 검토하고자 함.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정 수용

○ AI·디지털 기술 발달과 OTT 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국경을 초월하는 범위로 확장되고 있으나, 국내 미디어법제는 방송·통신망 구분에 따른 분산적 법체계를 유지하여 방송-OTT 간 규제 격차가 발생하였고, 시장의 불공정성·불확실성 및 국민의 미디어 주권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방송-OTT를 '미디어'의 확장적 개념을 공정하게 규율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동 제정안은 기존 법률체계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개별 조문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미디어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송 규제를 기준으로 과도한 공적 책무와 심의를 적용할 경우 국내 OTT·FAST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규제의 한계로 인해 해외 OTT의 국내 소비자 차별(국내 서비스 미제공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심의규정(안 제14조) 및 자체심의(안 제15조)를 통해 기존 방송과 유사한 수준의 사후 심의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중요한 시장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행 「영화비디오법」의 자체등급분류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

○ 또한, VSP에 대한 '명예훼손 등 콘텐츠 관리 의무(안 제63조)'는 사업자의 상시적 사적 검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공개 의무(안 제62조)'는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 수준과 예외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 제정안은 ①「정부조직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미통위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권한을 침해하는 입법일 뿐 아니라,
②방송과 OTT의 사업자 지위·역할·책임상 차이점을 간과한 수평적 규제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③법의 핵심 개념인 '시청각미디어'의 정의 또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제정안 전체에 대해 수용 불가함.

○ 본 제정안이 제시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문체부 소관 법률인 「영상진흥기본법」상 '영상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의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음악’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개념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주 수정이 필요함.

○ 「방송법」 제5조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것은 방송과 OTT의 매체별 특성을 간과한 수평적 규제로서 수용할 수 없음.

- 공공재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할당받아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과 개방된 인터넷망을 통해 소비자가 자발적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OTT는 본질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수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국내 OTT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음.

○ 미디어란 매개체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시청각미디어(영상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영상을 편성·배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행위와 객체를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간결성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므로, 법리상 오류가 존재하는 ‘시청각미디어’ 용어는 삭제가 필요함.

○ 그 밖에 사업자 정의 체계의 완비성 부족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으로 분류되는 문제, 알고리즘 기술 금지 문제,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자체등급분류의 중복 규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 문제, 미디어교육의 소관 문제 측면

에서도 본 제정안에 반대함.

□ 재정경제부: 신중검토

○ 조세제도는 매년 경제·재정 여건, 과세형평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관하는 사항으로,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최근 뉴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음주·흡연·마약 장면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안 제14조에 따른 심의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등급 분류 과정에 '음주·흡연·마약·사행행위 등의 조장·미화 및 과도한 묘사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안 제36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광고에도 금지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기준도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중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불법 콘텐츠 중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신중검토

○ 안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중복규제로 인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법체계 일관성을 위하여 삭제가 필요함.

○ 안 제77조제2항은 「방송법」과 달리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고 있는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려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함.

□ KBS: 신중검토

○ 유튜브 등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 및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영방송으로서 KBS·EBS·MBC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고, 편성·광고 규제에 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 한국방송협회: 수정 수용

○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신규 미디어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규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것인데, 제정안이 현행법의 규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답습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 EBS: 신중검토

○ 제정안의 목표는 단순한 산업 진흥이나 경쟁 촉진에서 벗어나 공적 여론 형성의 보장, 민주주의 기능 유지, 시청자 권익 증진을 재정의하려는 것이므로, 공영방송서비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채널A: 신중검토

○ OTT·플랫폼사업자를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종합편성채널을 공공영역의 '보도채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종편이 보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영방송과 달리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영역 편입에 따른 규제 수준은 사업자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종편채널을 보도채널사업자로 분류하여 대표자 선임과 보도책임자 임명 절차에까지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경영 자율성, 주주의 경영권, 이사회의 인사권·의사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업 경영에 관한 핵심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TV조선: 신중검토

○ 제정안은 현행법상 독립된 사업유형인 종합편성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규제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규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기관의 재량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져 자의적 규제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종합편성채널을 보도채널에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유형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MBN: 신중검토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효율적인 기존 방송 규제체계를 통합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종편채널은 보도를 포함해 드라마, 오락, 교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편성하는 민간 사업자로서, 이를 공공영역에 편입하여 편성 규제나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간 영역의 경영 자율성과 시장 논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거버넌스 규제 재검토가 필요함.

□ YTN: 신중검토

○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규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간 규제 불

균형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찬성하나,

보도전문채널을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하여 공적 책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종편PP와 보도PP를 동일한 보도채널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의 비례성 원칙 및 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연합뉴스TV: 신중검토

○ OTT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종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채널로의 통합, 보도채널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한도 조정, 협찬·협찬고지 의무화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편성·광고 규제나 협찬·심의 제도에 있어 차이가 없어 구분의 의미가 모호하며, 콘텐츠서비스의 경우 산업의 규모에 비해 규제 완화, 경쟁력 제고 등 지원 방안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신중검토

○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안이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

성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약화하고 있는바, 외주제작 생태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보장받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됨.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편성·광고·협찬·심의 규제 측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어, 영역을 구분하는 의미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시장영역의 콘텐츠서비스는 최소규제-최대진흥 관점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종합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국TV홈쇼핑협회: 수정 수용

○ 제정안은 상품소개판매채널을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을 하려는 경우 승인을 요구하는데, 비실시간인 데이터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도 승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한국IPTV방송협회: 신중검토

○ 방송·IPTV·OTT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정안이 설비 보유 플랫폼에 대하여 기존 유료방송 사전 규제(허가·재허가, 이용약관·요금, 채널 구성·운용, 재송신 등)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는바, 규제 형평성 개선을 위하여

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9조제16항은 「방송법」에서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제정안은 ①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태생, 성격, 작동 방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전통적 방송 중심의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무리하게 확장 적용하여 중첩 규제를 유발하고 있고, ②다각적 규제를 받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방송 영역에 편입시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 등 기존 법체계와 중복·충돌이 심각하여 규제 정합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③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어 규제 합리화를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배치되어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④한-미 FTA 위반 소지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관련한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삼성TV플러스: 신중검토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춘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제정안은 전통 방송, 온라인 플랫폼, FAST 서비스의 본질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규제 정당성

및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법체계와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범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정의조항에 따르면 FAST서비스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제의 중복이 우려됨.

○ 인터넷 기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전통 방송과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유로운 콘텐츠 내용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수신료나 구독료가 아닌 광고료만을 재원으로 하는 FAST서비스에 대하여는 유연한 광고 정책이 필요함에도 서비스 특성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광고 규제는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알고리즘 추천·배치 시스템은 플랫폼서비스의 단순 부가 기능이 아닌 이용자 경험, 콘텐츠 발견 가능성, 시청 지속성, 서비스 차별화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자산인데,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정보의 공개 의무는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 LG채널: 신중검토

○ 실시간뿐만 아니라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FAST는 기존의 방송·통신·SNS·OTT 중 어느 하나로 단순히 분류하기 어려운 플랫폼 중립적인 서비스로, 이를 단독으로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나 광고 형태 측면에서의 타 플랫폼과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나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현저한 열위에 있는 국내 FAST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의 활성화나 성숙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Ⅳ.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명, 목적, 정의(제1조 및 제2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의 제명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이며, 안 제1조는 「방송법」을 기반으로 한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안 제2조는 각종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정의 및 분류 체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청각미디어”**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공영방송서비스와 지상파방송서비스의 경우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것(이하 “라디오방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시청각미디어콘텐츠(시청각미디어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영상 및 음성·음향 또는 그 복합체로 이루어진 내용물)를 편성·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영방송서비스**: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이하 "한국방송공사"라 한다)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송문화진흥회"라 한다)가 최다출자자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지상파방송서비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다만, 공영방송서비스는 제외한다. 다. **보도채널**: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보도를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라. **공동체라디오방송** : 지상파방송서비스 가운데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출력되는 공익목적의 라디오방송 4. "**시장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이외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말한다. 5.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스: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할 때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채널** 2) **상품소개판매채널** 3) 보도 및 상품소개판매채널 이외의 채널로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 나.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시청자가 선택한 시점에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배치 또는 목록을 구성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다.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 또는 사업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제작·편집·편성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이하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라고 한다)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6.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	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나.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구축하지 아니하고서 시청자에게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의 정보통신망(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은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제공플랫폼서비스”라고 한다) 2)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알고리즘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중개·공유하는 서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스(이하 “공유플랫폼서비스”라고 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7.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록을 한 자를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8.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은 영상·음향·음성·문자·부호·숫자·도형·도표·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의 편성 또는 배치의 개별적인 단위가 되는 내용물을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편성**”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종류·내용·분량·시각 및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배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종류·내용·분량·목록 및 위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11. “**채널**”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연속적인 흐름 또는 이를 반영한 정보체계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제공 단위를 말한다.
	12. “**채널 구성**”은 시청각미디어채널의 종류·목록·번호를 정하는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유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4. “**시청각미디어광고**”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콘텐츠를 말한다.
	15. “**협찬**”이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16. “**협찬고지**”란 협찬을 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한다)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7.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편성·배치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알고리즘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편성·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8. “**보도**”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편성·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19.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20.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6.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나. (생 략)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IPTV법」	제 정 법 률 안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나. 검토의견

○ 제정안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사업자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분류체계 >

<table>
<tr><th colspan="5">제정안</th><th>현 행</th><th>예시</th></tr>
<tr><td rowspan="4">공공영역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td><td colspan="4">공영방송서비스</td><td rowspan="2">지상파방송사업자</td><td>KBS, EBS, MBC</td></tr>
<tr><td colspan="4">지상파방송서비스</td><td>SBS, 지역민방, DMB 등</td></tr>
<tr><td colspan="4">보도채널</td><td>보도PP</td><td>YTN, 연합뉴스TV</td></tr>
<tr><td colspan="4">공동체라디오방송</td><td>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td><td>관악FM 등</td></tr>
<tr><td rowspan="5">시장영역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td><td rowspan="3">시청각미디어
콘텐츠서비스
사업자</td><td rowspan="3">실시간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서비스사업자</td><td>보도채널</td><td>보도PP</td><td>YTN, 연합뉴스TV</td></tr>
<tr><td>상품소개판매채널</td><td>홈쇼핑PP</td><td>공영홈쇼핑 등</td></tr>
<tr><td>그 외</td><td>종편PP
일반PP, IPTV CP</td><td>채널A, JTBC,
스포티비 등</td></tr>
<tr><td colspan="3">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td><td>일반PP, IPTV CP</td><td>VOD서비스</td></tr>
<tr><td colspan="3">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td><td>-</td><td>유튜버 등 크리에이터</td></tr>
<tr><td rowspan="8">시청각미디어
플랫폼서비스
사업자</td><td colspan="3" rowspan="6">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td><td>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td><td>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td></tr>
<tr><td>위성방송사업자</td><td>KT스카이라이프</td></tr>
<tr><td>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td><td>KT, SKB, LGU+</td></tr>
<tr><td>중계유선방송사업자
(RO)</td><td>현대유선방송사 등</td></tr>
<tr><td>음악유선방송사업자</td><td>인천음악방송(주)</td></tr>
<tr><td>전광판방송사업자</td><td>㈜디지틀조선일보 등</td></tr>
<tr><td>전송망사업자</td><td>㈜중부케이블넷 등</td></tr>
<tr><td rowspan="2">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서비스사업자</td><td>제공플랫폼</td><td>부가통신사업자</td><td>넷플릭스, 티빙 등</td></tr>
<tr><td>공유플랫폼</td><td>부가통신사업자</td><td>유튜브, 인스타그램 등</td></tr>
</table>

주1: 음영처리한 부분은 현행 방송관계법 체계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임.
주2: 종편PP, 음악유선·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경우 제정안에 따른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견이 있음.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콘텐츠·사업자), 시청자 등 주요 정의

○ **첫째**,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를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공영·지상파서비스에 한정하여는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방송법」은 '방송'을 송신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방송을 한다'는 표현이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를 제공 또는 매개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안 제2조제2호에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시청각미디어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내용물'로 설명함으로써, 시청각미디어가 제공 또는 매개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의 매개체로 취급하고 있어 법률안 내에서 개념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시청각미디어콘텐

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기존 '방송을 한다'에 상응하는 개념 및 표현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청각미디어'가 '방송'의 개념을 승계하면서 방송 외 OTT 등을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서비스' 개념을 정의한 후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조문의 간결성 및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시청각미디어콘텐츠와 프로그램, 채널 개념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하고, 제정안 내 개념 간 혼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채널'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해왔음.

○ 그러나 제정안은 안 제15조(자체심의)에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보도채널을 제외하도록 한다거나,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프로그램-채널-서비스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안 제2조제8호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편성 또는 배치의 개별적 단위가 되는 내용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는 종전의 PP 개념을 승계하는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와 신규 개념인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만 포함됨.

- 이 경우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공영방송, 지상파, 보도채널)나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SO, 위성방송, IPTV 등)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현행과 달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3장(공공영역)과 제5장(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서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안 제2조제3호다목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보도채널’을 규정하면서 이를 보도를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정의하여 채널과 서비스 개념을 혼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가목에서도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예시로 보도채널, 상품소개판매채널 등 ‘채널’을 들고 있는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서비스와 채널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채널을 서비스의 예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셋째**, 사업자를 지칭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방송법」은 방송의 유형별로 방송-방송사업-방송사업자를 단계적·체계적으로 정의하였으나,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개별 서비스군별로는 사업과 사업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채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개별 조항마다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지칭해야 할 것이나,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7조제1항제8호 등 일부 조항에서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자'로 표현하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서비스사업-서비스사업자의 단계적 정의를 마련하고, 사업자를 지칭하는 명칭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정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표현인 시청자와 이용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5호제다목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가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제작·편집·편성한 주체인 '시청자 또는 사업자'를 '이용자'로 약칭하고 있음.

○ 콘텐츠를 제작·편집·편성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객체가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제공받

는 객체를 ‘이용자’로 규정하는 대신 ‘시청자’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안 제63조는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6호나목은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채널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안 제63조의 취지가 불법·유해콘텐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시청자의 시청’을 제한하도록 수정하고, 조 제목 역시 ‘시청자 보호’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편성·전문편성 구분

○ **첫째**, 제정안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현행법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편PP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임.

○ 「방송법」은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구분하여 정의[36]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를 별도로 규율하여 승인제, 소유·겸영 규제,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제도를 두고 있음.

○ 제정안과 같이 종편PP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 종편PP 4개사(채널A, JTBC, MBN, TV조선)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들에 대한 규제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르면 PP는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인 실시간 시청각 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분류되고(홈쇼핑PP는 예외적으로 승인사업자로 분류), 종전 승인사업자였던 종편PP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승인→등록)되면서 기존 사업자는 재승인 심사 없이 유효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는 규제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현행법상 종편PP 사업자인 채널A, TV조선, MBN은 제정

---

36)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안이 종편PP를 공공영역인 ‘보도채널’로 분류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37]

○ 즉, 종편PP가 제정안에 따른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보도채널에 속하는지 불분명하여 종편PP에 대해 여러 지위가 중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제정안은 종합편성뿐만 아니라 전문편성제도 역시 폐지하고자 하는데, 전문편성제도를 전제로 하는 제도는 존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제정안은 현행법상 전문편성 사업자의 일종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를 상품소개판매채널로 명명하고 있으나, 안 제6조는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대신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전문편성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개별 조문에서는 여전히 전문편성제도를 전제로 한 제도를 남겨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문편성 제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관련 제도 또한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37) 이와 관련하여 본 검토보고서 중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77-78p)” 참조

3) 보도채널

○ **첫째**, 보도채널의 분류 과정에서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간 체계상 불합치 및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정안은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보도채널을 공공영역(안 제2조제3호다목)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시장영역의 하위 분류인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한 종류(안 제2조제5호가목)로 열거하고 있음.

○ 이처럼 동일한 규제 대상이 상호 배타적인 영역에 중복하여 속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논리적 모순에 해당하므로, 보도채널의 영역 분류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보도채널의 정의가 순환정의(Circular Definition)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보도채널로 분류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안 제2조는 보도채널을 '안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정의하는 반면, 안 제20조제3항은 '제2조에 따른 보도채널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의와 승인요건이 서로를 참조하는 순환정의의 오류에 빠져있음.

○ 이로 인해 보도채널의 본질적 개념, 요건 및 구체적 판단 기준

이 부재하여 단지 명칭과 문언에 의존해 범위를 유추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보도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송출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까지 보도채널에 포섭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 공공영역은 엄격한 규제와 공적 책무가 부과되는 핵심 영역인바, 보도채널을 공공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제공 시간 중 보도프로그램의 비율 기준을 정하는 등 보도채널의 실질적 개념과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도채널의 성격이 콘텐츠 제공 단위인 '채널'인지, 역무 형태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문언상 보도채널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연속적 흐름 또는 이를 반영한 정보체계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제공단위인 '채널'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런데, 안 제2조제3호다목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보도채널'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같은 조 제5호가목에서도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정의 과정에서는 해당 서비스군의 예시로 보도채널을 들고 있음.

○ 콘텐츠의 제공 단위인 채널과 역무의 일종인 시청각미디어서비

스는 법적 성격이 명백히 상이한 개념임에도 제정안은 이를 동일시하거나 혼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보도채널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종전의 보도PP 및 제정안에 따른 보도채널과 관련하여, 여러 표현이 혼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보도 및 보도채널만 정의하고 있을 뿐, 관련 사업자는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법률안 내에서 상이함.

○ 사업자가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것인지, 제공하는 것인지 법 전반에 걸쳐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보도채널사업자라는 약칭을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되는 안 제9조 또는 제2조(정의)에서부터 약칭함으로써 법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표 현
현행법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안 제9조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안 제11조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안 제20조제3항	보도채널을 하고자 하는 자
안 제21조제1항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이하 “보도채널사업자”로 약칭)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보도채널사업자
안 제66조	보도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4) 그 밖에 사업자 분류체계 개편 등

○ **첫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설비 보유 서비스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7조제2항·제3항, 제59조 및 제60조 등을 종합해보면, 제정안은 SO·IPTV와 위성방송을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파악되나, 위성방송이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포섭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안 제2조제6호가목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IPTV법」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의를 통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들을 명확히 정의하지 아니한 채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

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함.

○ 안 제2조제6호가목에서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를 갖춘 ‘종합유선방송(SO)’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포섭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여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의 경우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법률상 정의 조항과 허가 등 실체적 조항 간 개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위 및 규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위성방송을 명확히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전기통신회선설비 외 설비로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추가 열거하는 등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미디어 기술 발전 및 신규 서비스가 출시에 따라 일부 OTT서비스가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및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중첩적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OTT 관련 서비스 분류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치지직 등 플랫폼이 단순히 이용자제작 콘텐츠를 중개·공유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시청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장 경쟁 속에서 향후 OTT 플랫폼이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사업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여 특정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자군에 중첩적으로 포섭될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OTT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제정안은 현행법상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NO)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대한 정의 및 분류를 하지 아니하여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방송법」은 DMB를 방송의 일종으로 포섭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외 사업자군으로서 음악유선·전광판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여 별도의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제정안에서는 해당 사업자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지고 재허가 등 사업자 관리 체계가 상실될 위험이 있음.

○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해당 사업자들이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며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제정안에 따른 체계 하에서 어떻게 분류 및 관리할 것인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유선설비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송신하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 1개,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전광판방송사업자' 36개, SO로부터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 48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 DMB의 경우 2024년 12월 말 기준 허가받은 사업자가 17개이고, 2024년 방송사업매출액 합계는 약 30억원임.

○ **넷째**, 현행법상 홈쇼핑PP 및 제정안에 따른 상품소개판매채널과 관련하여 여러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안 제2조는 상품소개판매채널만 정의하고 있을 뿐, 관련 사업자는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법률안 내에서 상이함.

○ 사업자가 상품소개판매채널을 행하는 것인지, 제공하는 것인지 법 전반에 걸쳐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보도채널사업자’와 같이 상품소개판매채널의 사업자를 약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표 현
현행법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안 제31조제1항	상품소개판매채널을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
안 제36조제3항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안 제66조제1항	상품광고판매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안 제77조제1항	상품광고판매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상품광고판매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안 제98조제6항	상품소개판매채널 사업자

○ **다섯째**, 제정안 전반에서 정의 또는 약칭되지 아니한 표현이 활용됨으로써 법체계 정합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는 정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광범위하게 여러 조항(안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등 제정안에서 정의된 표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중계(방송)권 또는 중계시청각미디어서비스권, 방송광고 또는 시청각미디어광고 등의 표현 또한 제정안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제정안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문체부 소관 법률인 「영상진흥기본법」상 ‘영상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음악’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개념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주 수정이 필요함.

-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미디어의 정의에 입각하면, 시청각미디어(영상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영상을 편성·배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행위와 객체를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간결성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므로, 법리상 오류가 존재하는 ‘시청각미디어’ 용어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그 자체로 편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프로그램(Program) 용어와, 내용물을 뜻하는 콘텐츠(Contents)를 엄격히 구분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배제한 일방향으로 송출되는 편성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송법 체계에 맞도록 ‘프로그램’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한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용어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OTT 플랫폼은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해당하

여,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자로 분류되어 혼선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함.

○ **(KBS: 신중검토)**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KBS·EBS와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는 설립 근거, 공적 역할, 재원 등 성격이 다름에도 이들을 공영방송의 범위로 동등하게 규정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 제정안의 취지가 방송을 미디어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공영 방송서비스' 대신 '공영미디어서비스'로 변경이 필요함.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제정안은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라디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수평적 규제체계에 입각한 완성도 있는 규율체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정의와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또한, 유튜브와 OTT에서도 이미 실시간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실시간-비실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경우, 공유플랫폼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를 단순히 '이용자'로 정의하는 것은 산업의 작동 방식과 규모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안 제2조제13호의 '유료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기존 법체계의

유료방송을 포괄하려는 정의로 보이나, OTT 또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정의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종전 법체계상 협찬의 경우 홍보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시장을 기형적으로 왜곡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EU의 지침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안 제2조제15호의 협찬이 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알고리즘 역시 사업자가 설계·운영하는 서비스의 결과라는 점에서, 안 제2조제17호의 편성책임자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편성·배치는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채널A: 신중검토)** 종편이 보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영방송과 달리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영역 편입에 따른 공적 책임과 규제 수준은 사업자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MBN: 신중검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효율적인 기존 방송 규제체계를 통합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종편 채널은 보도를 포함해 드르마, 오락, 교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편성하는 민간 사업자로서, 이를 공공영역에 편입하여 편성 규제나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간 영역의 경영 자율성과 시장 논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거버넌스 규제를 재검

토할 것을 요청함.

○ **(TV조선: 신중검토)** 제정안은 현행법상 독립된 사업유형인 종합편성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규제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고, 규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기관의 재량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져 자의적 규제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종합편성채널을 별도 유형으로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종편채널이 '보도를 행하는 채널'로서 보도채널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종편채널은 보도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교양,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자로서 보도전문채널과 사업목적 및 편성 구조가 다름.

○ **(YTN: 신중검토)** 공공영역 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 역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제정안은 보도전문채널을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공영방송과 달리 운영비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근거 등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뉴스·시사보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보도전문채널'과 다양한 장르를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받은 '종합편성채널'의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범주로 규정할 경우 사업 유형 간

구별을 불명확하게 하여 현행 승인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보도PP와 종편PP와 같이 별도의 규율 체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 편성비율 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합뉴스TV: 신중검토)** '보도전문채널'은 뉴스 편성 비율이 95% 이상으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정보 접근성 확대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비상업적 성격의 채널인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오락·드라마·보도·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상업적 성격의 채널로, 두 채널의 성격과 편성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현행법 역시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보도채널'로 통합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도전문채널의 공익적 역할 등 본연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기존 법 규정을 체계적·법리적 고려 없이 혼합·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정교한 포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법적 불확실성 및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스트리밍 기반 모든 미디어사업자는 콘텐츠 목록을 구성 및 배치하는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자, 채널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

랫폼서비스사업자 역할을 분리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승인이 필요한 상품소개판매채널의 범주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라이브커머스와 인플루언서 기반 커머스 콘텐츠까지 승인사업자로 관리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중첩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삼성TV플러스: 신중검토)** 정의조항에 따르면 FAST서비스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제의 중복이 우려되고, 비실시간 콘텐츠가 실시간보다 시청자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실시간 콘텐츠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LG채널: 신중검토)** 실시간뿐만 아니라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FAST는 기존의 방송·통신·SNS·OTT 중 어느 하나로 단순히 분류하기 어려운 플랫폼 중립적인 서비스로, 이를 단독으로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나 광고 형태 측면에서의 타 플랫폼과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나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2. **제1장 총칙**: 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적용범위,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주어지는 자유와 독립성과 함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 등을 규정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증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이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4조(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매일 1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민주적 여론형성을 저해하거나 지역·세대·계층·성별간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범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제6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따른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제작·편성·배치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공동체의 조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사회교육기능을 높이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 다양성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바른 언어 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방송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승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전반적으로 방송사업자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음.

○ **첫째**, 제정안 제6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방송법」과 달리 균등한 기회 제공 노력의무, 정치적 균형성 유지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정치 관련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균등한 기회 제공과 정치적 균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할 최소한의 의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전통적 방송과 OTT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형 및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없는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제정안 제8조에 따른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의 실효성 및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8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으로, 국내사업자에 대하여만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고,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며, 국내외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조항을 둠으로써[38] 해외 사업자 등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의 규율 대상에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39],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40]가 포함되는바, 해외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나 글로벌 OTT사업자에게

---

3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39)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포함
40)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 포함

까지 신고의무 등 제정안에 따른 여러 규제가 집행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국내법 적용을 강제할 경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등 국제 통상 규범과의 충돌 및 통상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역외적용 대상이 되는 핵심 조항을 선별하고, 통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제정안은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제5조에 따른 공적 책임과 제6조에 따른 공정성·공익성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데, 시장영역 사업자에게도 공공영역 수준의 과도한 공적 책무가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안 제6조는 「방송법」 제6조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범위만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넓힌 것인데, 제2항에 따른 성별·연령·직업·종교 등에 따른 콘텐츠 편성·배치 등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할 의무는 이용자의 성별·연령·시청이력 등을 분석하여 최적 콘텐츠를 개인화하여 추천·배치(Curation)하는 것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금지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안 제8조에 따른 국외행위 역외적용 규정은 글로벌 OTT 플랫폼 대부분이 소재한 미국 정부와의 통상 마찰 및 FTA 협정 위반에 관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4조제3항에 따른 편성책임자 성명의 공표 의무는 시청자 권익 증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이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의 공적 책임과 제6조의 공정성·공익성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합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에 따른 공정성·공익성 관련 조항이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안 제5조는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상파방송 수준의 규범적 규제를 민간영역 사업자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3. 제2장 기본사항 (1): 소유제한 규제,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9조는 「방송법」 및 「IPTV법」 제8조를 승계하여 지분 소유 및 겸영에 관한 규제를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방송법」 제13조 및 「IPTV법」 제7조와 같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안 제11조는 「방송법」 제14조 및 「IPTV법」 제9조와 같이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규제를 정하고 있음.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제8조(소유제한 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	제8조(겸영금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제한 등)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 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		④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서비스 및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		⑥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		⑧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서비스,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 정당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⑫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①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⑫ 제2항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⑯ 특정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도서산간 등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수신이 어려운 지역은 제16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⑱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제10조(결격사유)** ① 국가·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2.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3.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이하 “플랫폼서비스”라 한다)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4조, 제45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이 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 및 제4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법인 대표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이하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라 한다)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제1호와 제7호를 제외한다.
1. 외국인	1.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보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해	**제11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②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보도채널 및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제외한다)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다만,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보도채널 및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제외한다) 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①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1항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호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외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 2.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식·지분의 소유자

나. 검토의견

1)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검토 (안 제9조)

○ **첫째**, 소유·겸영규제의 적용 대상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추가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음악유선·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특성상 독과점으로 인한 여론 왜곡이나 시장 교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소유·겸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의 적용범위를 차등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종편PP에 대한 소유·겸영규제의 적용 여부 및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법」은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구별하여 종편PP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40% 이하,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에 대하여는 30% 이하(구독률 20% 이상 일간신문은 금지)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를 부과해 왔음.

○ 그러나 제정안은 현행 법체계와 달리 종편PP를 별도로 분리하

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편PP를 포함한 모든 PP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될 것이라는 점에서, 종편PP에 대한 소유·겸영규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현행법상 종편PP 사업자인 채널A, TV조선, MBN은 제정안이 종편PP를 공공영역인 '보도채널'로 분류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41]

○ 방송의 여론 집중 방지 및 공공성 확보라는 소유·겸영 규제의 입법 목적과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종편PP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소유·겸영규제의 유지 및 완화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받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여론 독과점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성과 개별 창작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미디어 생태계의 산업 위축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

41) 이와 관련하여 본 검토보고서 중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77-78p)" 참조

요가 있음.

○ **넷째**, 정당의 소유규제 대상이 방송을 넘어 뉴미디어 및 플랫폼까지로 확대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법」 제8조제10항[42]은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방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정당의 자발적인 정책 홍보나 소통을 위한 서비스까지 소유·겸영 제한 대상에 포섭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예외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안 제9조제16항에 따라 2018년에 실효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송법」 제8조제16항·제17항[43] 및 「IPTV법」 제13조[44]에

---

42)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43)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

따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그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2015년에 도입되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후 2018년 일몰되었음.

○ 참고로, 규제가 일몰된 2018년 이후 주요 유료방송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현행 규제체계 하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인 KT(IPTV)조차 24.8%로 규제 상한선(33.3%)에 미치지 아니함.

- 그러나, 일몰된 규제를 복원할 경우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이 35.9%로, 규제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법률 제13341호(2015. 6. 22.) 제8조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4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법률 제13232호(2015. 3. 27.)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2018년 이후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가입자 수 기준) 추이 >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KT 계열	HCN (SO)	-	-	3.7	3.5	3.5	3.5	3.5
	KT스카이라이프 (위성)	10.0	9.4	8.9	8.4	8.1	7.8	7.6
	KT (IPTV)	21.2	22.2	22.9	23.6	24.3	24.3	24.8
	소계	31.2	31.5	35.5	35.5	35.9	35.6	35.9
SKB	SKB (SO)	-	3.9	3.7	3.5	3.5	3.5	3.5
	SKB (IPTV)	14.4	15.3	16.3	17.1	17.9	18.5	18.7
	소계	14.4	24.3	24.7	25.1	25.7	26.3	26.4
LG 계열	LG헬로비전 (SO)	12.4	11.7	11.0	10.5	10.1	9.9	9.6
	LGU+ (IPTV)	-	13.2	14.2	14.9	14.7	15.0	15.3
	소계	12.2	25.0	25.2	25.4	24.9	24.9	24.9

자료: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방미통위 (2026.5.)
주1: KT계열은 2019년까지는 HCN이 제외되며, HCN이 인수된 2020년부터 셋을 합산함
주2: SKB는 2018년까지는 SKB(IPTV)이며, SKB(SO)가 합병된 2019년부터 둘을 합산함
주3: LG계열은 2018년까지는 LGU+이며, LG헬로비전이 인수된 2020년부터 둘을 합산함

○ 합산규제 일몰 이후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가입자를 확보해 온 사업자에 대하여 일몰된 규제를 복원하여 제재조치 등을 행할 경우, 적법하게 형성된 사업자의 신뢰보호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안 제10조)

○ **첫째**, IPTV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삭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PTV법」 제4조제2항[45]에 따라 IPTV사업 허가의 대상은 법인으로 한정되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한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 제10조제2항은 IPTV를 포함하여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IPTV 사업자 임원에 적용되던 결격사유의 근거가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24년 기준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에 달하여 법인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상파·SO·위성방송 등 다른 사업자군과 동일하게 대표자에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 **둘째**, 결격사유 적용 대상에 전광판방송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법」은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대상을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해왔으나, 동 제정안은 이를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까지 결격사유 규정의 수범대상으로 포섭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는 36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 전광판방송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직접 노출되는 매체로서 공공장소에서의 매체 영향력 및 여론 형성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하여도 경영상 책임성과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현행 규제체계 하에서는 결격사유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던 기존 사업자들에게 제약을 부과하려는 경우 이들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에 대한 검토 (안 제11조)

○ **첫째**, 제정안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종편PP에 대한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의 적용 여부 및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법」 제14조제2항은 종편PP에 대하여는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재산상 출자 출연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를 부과해 왔음.

○ 그러나 제정안은 현행 법체계와 달리 종편PP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편PP를 포함한 모든 PP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될 것이라는 점에서, 종편PP에 대한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현행법상 종편PP 사업자인 채널A, TV조선, MBN은 제정안이 종편PP를 공공영역인 '보도채널'로 분류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46)]

○ 여론 형성 영향력을 가진 방송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여론 왜곡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여 미디어 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외

46) 이와 관련하여 본 검토보고서 중 "4.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77-78p)" 참조

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의 취지와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종편PP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규제의 유지 및 완화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에서 공동체라디오서비스사업자와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1조제5항은 외국자본 출자·출연 규제를 위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제1항은 공동체라디오서비스사업자를, 같은 조 제3항은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유규제 위반 시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방미통위로 하여금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규제를 적용받는 모

든 사업자군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공동체라디오서비스사업자와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11조제6항은 시정명령의 대상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방통위 폐지 및 방미통위 출범으로 구분의 실익이 상실된 부분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방송시장 간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방송사업자 간 서로 다른 소유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상파와 보도채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소유규제 및 외국자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TV조선: 신중검토)** 제정안이 OTT 등을 제도권에 포삽하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기조로 하고 있음에도 OTT는 소유규제, 외국자본 출자 규제를 받지 않고 지상파와 보도채널만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함.

○ **(연합뉴스TV: 신중검토)** 제정안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 한도를 현행법상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있는데, 보도전문채널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보도전문채널의 공익성·공공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신속·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과 국민의 정치·사회적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1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IPTV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9조제16항은 「방송법」에서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제정안은 전통적인 허가·승인 사업자에 한하여 정당화되었던 지분 소유 규제를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동일하고 있는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신고제 시장구조와 진입구조는 원칙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움.

4. 제2장 기본사항 (2): 폐업·휴업 신고, 심의, 자료제출, 재산상황 공표 등(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2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 의무,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후적 내용 심의에 관한 것이며, 안 제16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안 제17조는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것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공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개인·가족·공동체 등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8.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시청각미디어서비스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
	17.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아동과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서비스제공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청각미디어광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	**제15조(자체심의)**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보도채널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는 제외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4조제7항으로 이동)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시청각미디어광고 판매를 위탁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시청각미디어광고 매출현황 2. 시청각미디어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산상황의 공표)**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있는바, 방송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2조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폐업·휴업 신고 대상이 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OTT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47]에 따라 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알리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폐업·휴업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와 중복될 수 있는바, 규제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일원화를 위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7)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진출입이 빈번한 1인 크리에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에까지 폐업·휴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의규정·자체심의 등 방송심의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심의하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심의에 관한 규정(심의규정)에 따라 방미심위가 사후적 내용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의규정의 포함사항은 현행 「방송법」과 상이하나, 이는 2026년 9월 기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5442호)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 범위를 방송사업자·RO·전광판방송사업자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확대하고 있는바, 종전 심의규정 준수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비실시간·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가 규율 대상으로 추가됨.

○ 시청자 등급분류(안 제14조제4항), 자체심의(안 제15조) 및 광고 규제(안 제14조제7항)의 경우에도 대상이 방송사업자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확대되었으므로 종전 방송사업자가 아니었던

RO·음악유선·전광판방송사업자와 비실시간·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가 규율 대상으로 추가됨.

○ 이처럼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심의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사후 심의를 통한 표현의 자유나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와 OTT 등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 **셋째**, 안 제16조에 따라 방미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 및 목적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정부 또는 방미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방송사업자·RO·전광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종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비실시간·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가 수범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됨.

○ 또한, IPTV사업자의 경우 현행 「IPTV법」 제15조, 제16조의2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이나 서비스품질 평가 등 일정한 목적에 한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해 왔으나, 제정안은 이를 포괄적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권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 범위와 목적을 확대하는 것은 주무부처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둘 필요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안 제36조제7항에서 ‘광고판매대행자’로 약칭하고 있음에도, 안 제16조에서 타 법의 인용 없이 ‘광고판매대행자’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심의규정 및 자체심의를 통해 기존 방송과 유사한 수준의 사후 심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역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안 제15조에 따른 자체심의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심의 관련 규정은 그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최근 뉴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음주·흡연·마약 장면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안 제14조에 따른 심의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등급 분류 과정에 '음주·흡연·마약·사행행위 등의 조장·미화 및 과도한 묘사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KBS: 신중검토)** 제정안에 따르면 OTT와 유튜브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범주에 포함하여 심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운영 중

인 심의 조직·인원 및 예산으로는 유튜브 등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잉 규제로 인한 콘텐츠 제작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법률에 근거한 과도한 내용 규제는 정비하여 표현물에 관하여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규제 중심의 심의규정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안 제13조에 따른 심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상당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임에도 그 대상의 범위를 '유사한 것' 등 모호한 문언으로 규정하여 행정부에 전권을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인터넷상 모든 영상콘텐츠가 잠재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법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큼.

- 또한, 공적 자산의 배타적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신고사업자에게까지 재산상황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 **(TV조선: 신중검토)** 광고주별·종류별·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은 단순히 총매출 현황이 아닌 특정 광고주와의 계약단가, 프로그램별 광고 수익성 등과 관계되어 사업자의 영업전략이 담긴 핵심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안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과도하여 삭제가 필요함.

○ **(삼성TV플러스: 신중검토)** 인터넷 기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전통 방송과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유로운 콘텐츠 내용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5.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 (1): 공영방송, 허가·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대표자·보도책임자 임명 등(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3장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것으로,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지원,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공영역 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 등의 제도에 관한 것이며, 안 제26조·제27조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대표자 임명절차로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및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18조(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① 공영방송은 민주적 공론장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은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③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청각미디어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	④ 공영방송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영방송은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와 가치를 창달하여 전파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① 제18조에 따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항, 제8항에서 정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방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 경우 세부내용 및 성과와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	**제20조(허가·승인)** ① 공영방송서비스 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는 지상파방송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보도채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 ~ ⑫ (생 략)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공정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	**제21조(변경허가·변경승인 등)**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보도채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2.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재허가·재승인)**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보도채널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20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1.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비스 보호업무 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시청자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준수 여부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승인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4. 제11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8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9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시청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보도채널사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보도채널사업자가 제24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2.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② 보도채널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도채널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2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방송법」 제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제도를 승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책무에 관한 안 제18조는 「방송법」 제44조에 따른 KBS의 공적 책임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제정안은 KBS뿐만 아니라 EBS·MBC에도 법률에 의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9조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책임과 지원의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은 7년이며, 같은 법 시행령[48]에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

48)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

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음.

○ 그런데 제정안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 상한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있어,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5~7년에서 3~5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

○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심사 주기가 짧아져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여 공정성·공익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반면, 방송사업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23조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 중 '방송평가'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로 대체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송법」 제31조[49]에 따라 방미통위는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전반을

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49)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음.

- 방미통위규칙에 따라 매년 방송평가결과를 연간 단위로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이 가능함.[50]

○ 반면, 제정안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는 안 제69조[51]에 근거한 것으로, 방미통위가 매년 수립한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 공개하는 평가로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52]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참고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임.

---

50)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조(평가대상 기간) ① 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51) 제정안에서는 제68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은 안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음.

5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참고로, 2025년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21개사[53], 부가통신사업자 26개사[54]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속하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음.

○ 이처럼 두 평가 제도는 평가의 대상·범위 및 목적이 상이한바, 평가 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재허가·재승인 시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공적 책무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과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에 관한 사항이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운영에 관한 평가 역시 이용자 보호와 불만처리 실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변화된 평가 제도 하에서도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존 방송평가 요소의 유지·보완 여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제정안 제23조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최근 「방송법」 개정사항을 누락하였는바,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53)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54) 앱마켓 4개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 지난 2026년 4월,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방송법」이 개정[55]된 바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 본 법률안 제정 이후에도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 제정안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1조·제22조)** 안 제21조제3항과 안 제22조제2항·제3항은 제1호 단서를 전제로 하는 「방송법」 규정을 승계하고 있는데,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 단서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3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가 안 제69조에 근거함에도 안 제23조제3항제1호는 이를 제68조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방송광고가 시청각미디어광고로 수정됨에도 안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에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5) 법률 제21572호, 2026.4.21.시행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24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유지·재개명령’이 안 제86조에 근거함에도 안 제24조제1항제7호는 이를 제85조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25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정의 규정에 따른 구분체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수정하여 표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6조)** 대표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KBS, EBS, MBC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으나, 정의 규정에 따른 구분체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공영방송서비스’로 수정하여 표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KBS: 신중검토)** 공영미디어의 독립성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에 의해 보장되어야하는바,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독립적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현행 재허가 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와 허가권자인 방미통위 양 당사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외 사례(미국 8년, 영국·프랑스 10년)와 같이 개선이 필요함.

○ **(EBS: 신중검토)** 누구나 공영방송서비스에 격차 없이 접근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방송 수신료는 공적 정보·교육·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재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지털 스트리밍 환경에서 채널과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공영방송이 플랫폼 안에서 쉽게 발견되고, 경제적 부담 없이 많은 계층과 세대로부터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콘텐츠의 현저성 또는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TV조선: 신중검토)** 안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종전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대규모 장기투자를 가로막아 안정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한편, 종편채널이 보도채널로 포섭될 경우 안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사기업의 소유 구조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없이도 보도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방송사 내부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편성 규제, 광고(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28조는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에 관한 것이며,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적용되는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제28조(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를 둔다.
	1.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다만,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보도채널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	3.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② (생 략)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편성)** ① 한국방송공사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보도와 오락에 관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자체 제작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제70조에 따른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시청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재원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⑦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④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⑧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④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0조(광고)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는 제36조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청각미디어광고 등)** ①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광고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시청각미디어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과 시청각미디어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②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청각미디어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프로그램 외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그램 시작 전후 또는 프로그램 중간에 별도의 광고 시간대를 구성하여 송출되는 광고 2. 프로그램 내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속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노출하는 광고 3. 그 밖의 광고: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광고
③ (생 략)	③ (생 략)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④ (생 략)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내 광고가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과 제15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프로그램 내 광고 판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⑥·⑦ (생 략)

나. 검토의견

○ 안 제29조는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편성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방송법」 제69조·제71조·제72조에 분산되어 있는 편성 규제를 하나의 조로 통합 정비하고 있는데, 현행 규제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0조는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에 관하여 안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바, 광고 규제에 관련하여는 후술할 안 제36조에서 일괄 검토하고자 함.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편성비율 규제의 대상 축소 및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송법」 제69조제2항은 시청자가 오락뿐만 아니라 다큐, 시사,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사업자가 저비용의 자극적인 오락 방송프로그램만을 편성하는 대신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편성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PP를 대상으로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를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29조제1항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중 KBS만을 규제 대상으로 남겨두고, 다른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최근 미디어 이용방식이 방송사가 편성하여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에서, VOD·FAST[56] 서비스나 OTT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주도적으로 선택·시청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편성하는 특정 방송분야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의 실효성이 낮아졌고, 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이 지적되며 분야별 편성비율 규제 완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57]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분야별 편성비율 규제와 관련하여는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분야별 편성비율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실효성에 관한 근본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를 유지할 경우 K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MBC, SBS, EBS 등)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타당성, 교양 프로그램 편성 의무 삭제

56)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란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비용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채널과 비실시간(VOD)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함.

57) 의안번호 제2219086호, 김현의원 대표발의(2025.5.29.)

가 교양·다큐멘터리 제작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71조제1항은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수입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입으로부터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은 별도로 분리하여 장르별 의무편성비율을 정하여 관리해 왔음.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은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을 다음의 범위에서 방미통위가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구 분		편성비율 기준
매체별 규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지상파(지상파PP 포함)	60~80%
	SO, 위성방송사업자	40~70%
	PP(지상파PP 제외)	20~50%
장르별 규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영화	20~40%
	애니메이션	30~50%
	대중음악	50~80%

○ 이러한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는 1990년 도입된 이래 국내

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물의 방송을 통해 국내 문화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 그런데, 제정안 제29조는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편성 규제를 정하면서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 참고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편성규제를 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와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의 채널 구성 규제를 정하고 있는 안 제58조에서도 국내 제작물 편성 규제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자국 문화 보호 및 미디어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해당 규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FTA 협정문[58]에 따라 향후 외국 수입 콘텐츠 편성 규제를 재도입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29조제7항은 「방송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를 승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의 적용 대상을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KBS·EBS·MBC)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58) 한-미 FTA의 역진방지 조항(11.12조 제1호 다목)은 현존 규제보다 후퇴하지 않는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제한이나 규제를 기존보다 후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불허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내 애니메이션의 신규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도입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의 대상을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에서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로 축소하는바, 현행 규제 대상 중 SBS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 SBS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단서[59]에 따라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 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신규 편성하여야 하는바, 최근 9년간 매년 근소한 차이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 SBS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율 (%)	1.02	1.04	1.03	1.07	1.16	1.15	1.10	1.04	1.01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대상에서 SBS를 제외할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 및 편성의 자율성 제고라는 입법 취

59)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와 함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규제를 삭제하고 있는데, 규제 존치 여부에 관하여는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여부와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방송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60]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안 제29조제8항은 「방송법」 제72조에 따른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를 승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을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KBS·EBS·MBC)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는 채널을 운영·편성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61]가 기획·제작까지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주제작시장를 육성하기 위한 것임.

---

60) 의안번호 제2219086호, 김현의원 대표발의(2025.5.29.)

61) 종전에는 규제 대상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PP였으나, 2018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종편PP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음.

○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제작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 규제 대상이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PP에서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3개사로 축소되어, SBS·지역민방과 종편PP 4개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 규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만 제약하고, 순수외주제작물을 구매하여 조달하는 데에 부담이 큰 지역민방 등을 규제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규제 완화가 영상제작사 등 미디어 창작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 콘텐츠 자생력을 약화시킬 우려 등 방송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 규제 대상 축소 등 규제 완화 취지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2]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규제 완화 방향에 관하여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섯째**, 안 제30조는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광고 관련 규제를 안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36조제2항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안 제30조에서 규정하도록 이동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

62) 의안번호 제2219086호, 김현의원 대표발의(2025.5.29.)

○ **일곱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단서를 통해 제외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단서 삭제가 필요함.

○ **(안 제29조)** 안 제29조제4항은 공공영역의 장애인방송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장애인방송 의무를 규정하는 안 제35조제2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표현이 상이한바, 법체계를 고려할 때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KBS: 신중검토)** 제정안에 따르면 MBC, SBS, 종편채널에 대하여는 분야별 편성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KBS만 규제를 적용받는 비대칭적 상황은 불합리하므로,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에만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순수외주제작물 규제 또한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장르가 융합이 심화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장르별 편성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고려할 때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또한 폐지할 필요가 있고, 외주제작사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가 기 달성되었으므로 순수외주제작물 규제의 폐지가 바람직함.

○ **(연합뉴스TV: 신중검토)**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송광고시장 침체 등으로 방송사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협찬·협찬고지가 의무화될 경우 협찬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방송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신중검토)** 제정안 제29조가 순수외

주제작물 의무편성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약화하고 있는바, 외주제작 생태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보장받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됨.

7. 제4장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1): 승인·신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편성 규제, 협찬·협찬고지 등(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4장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사업 승인·신고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편성·광고·협찬 관련 규제에 관한 것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제31조(승인·신고)** ①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소개판매채널을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 ~ ⑪ (생 략)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라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	**제32조(변경승인·변경신고)** ① 시청각미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4. 시청각미디어콘텐츠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	2.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다)	자(실시간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용자 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	**제34조(재승인 등)** ①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승인 유효기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 만료 후 계속 해당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1.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시청자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 시청각미디어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준수 여부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그 밖에 승인 당시의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0조제5항 규정은 제1항의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등)**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가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범위,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⑫ (생 략)	
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청각미디어광고 등)** ① 실시간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광고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시청각미디어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과 시청각미디어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	②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청각미디어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프로그램 외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그램 시작 전후 또는 프로그램 중간에 별도의 광고 시간대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송출되는 광고 2. 프로그램 내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속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노출하는 광고 3. 그 밖의 광고: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이를 시청각미디어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④ 외주제작사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내 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내 광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가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 규정과 제15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프로그램 내 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외주제작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내 광고가 포함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⑦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청각미디어 광고만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프로그램 내 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37조(협찬)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협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 협찬 2.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 3.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 4.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관련 시상품 또는 경품 협찬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외주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2.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의 협찬은 제외한다) 3. 시청각미디어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자의 협찬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2. 협찬을 받아 제작·제공이 완료된 시청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각미디어프로그램을 다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3. 시청자·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제38조(협찬고지)**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찬고지에 관한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실시간·비실시간·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시간의 경우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IPTV법」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CP)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비실시간의 경우 현행법상 PP나 CP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그 밖에 VOD서비스사업자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제작의 경우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크리에이터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상 종편PP의 승인·재승인 제도 적용 여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현행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도를 승계·재편하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PP는 ①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③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 ④그 외 PP로 구분됨.

○ 제정안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①보도채널, ②상품광고판매채널, ③그 외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분류하는데, 보도채널 정의의 부재로 인하여 현행법상 종편PP가 보도채널로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외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구분될 소지가 있음.

○ 현행법상 PP 중 보도PP는 제정안에 따른 공공영역의 보도채널로서 허가사업자로 전환되었고(안 제9조), 홈쇼핑PP는 제정안에 따른 상품소개판매채널로서 승인사업자로 유지되었으며(안 제31조제1항 단서), 종전 방송 형태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제를 적용하던 일반PP는 제정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제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편PP는 승인·신고 제도 중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종편PP가 ‘그 외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안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 신고의무가 부과될 뿐 더 이상 승인사업자가 아니게 되므로, 재승인 절차 없이 사실상 무기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규제 공백이 초래될 것임.

< 현행법 및 제정안에 따른 PP 승인·등록·신고제 >

「방송법」			제 정 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류		제도	제도	비고
보도PP		승인	허가	공공영역
홈쇼핑PP		승인	승인	유지
종편PP		승인	승인 또는 신고	불분명
그 외 PP (일반PP)	텔레비전방송	등록	신고	-
	라디오, 데이터방송	신고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	신고		

○ 2000년 「방송법」 제정 시 지상파에 비해 콘텐츠 기반이 약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 채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핵심채널로서 종편PP 개념을 도입하였고, PP에 대한 진입 규제를 승인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서도 보도·종편·홈쇼핑PP만은 승인제로 유지했던 당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종편PP를 보도채널로 분류하여 승인제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종편PP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도채널의 정의 조항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도채널로 분류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품소개판매채널과 같이 승인·재승인을 받도록 안 제31조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31조에 따른 신고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신고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9조의2제1항은 일반PP(실시간 텔레비전)의 등록요

건을, 같은 조 제2항은 일반PP(비실시간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신고요건으로서 자본금, 송출시설, 사무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을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기반과 역량을 사전 검증하고자 한 것임.

○ 그런데, 제정안은 PP 개념을 승계하는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각 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등록·신고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하면서도, 신고요건 및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물적·인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같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제정안 제34조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최근 「방송법」 개정사항을 누락하였는바,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6년 4월,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방송법」이 개정[63]된 바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63) 법률 제21572호, 2026.4.21.시행

○ 본 법률안 제정 이후에도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 제정안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광고의 분류체계 개편 등 규제 완화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4]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개정안은 동 제정안과 같이 방송광고의 분류체계를 7가지에서 3가지로 간소화하고 있으며, 종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유형분류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다만, 해당 개정안이 프로그램 내/외 광고를 제외한 '복합형 광고'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의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아니하는 동 제정안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 방향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현 행	「방송법 개정안」	제 정 안
第73條(放送廣告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	第73條(放送廣告등) ②방송광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유형별 방송광고의 종류·허용범위·	제36조(시청각미디어광고등) ②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청각미디어광

64) 의안번호 제2217983호,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현 행	「방송법 개정안」	제 정 안
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1.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편성되는 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외부에 편성되는 광고	1. 프로그램 외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그램 시작 전후 또는 프로그램 중간에 별도의 광고 시간대를 구성하여 송출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	2.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2. 프로그램 내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속에서 제품, 서비

현 행	「방송법 개정안」	제 정 안
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프포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내부에 편성되는 방송광고	스, 브랜드를 노출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3. 복합형 광고: 제1호 및 제2호 중 하나로만 분류하기 어렵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방송광고	3. 그 밖의 광고: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광고

○ **다섯째**, 협찬의 정의, 협찬금지 및 협찬 고지 등 협찬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5]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32조)**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라는 표현이 정의 없이 활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시간 시청

65) 의안번호 제2205020호,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405호,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447호,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고 근거 규정인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1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4조)** 동일한 내용의 「방송법」 규정 및 안 제34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승인’이 아니라 ‘재승인’을 받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5조)** 안 제35조제2항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장애인방송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장애인방송 의무를 규정하는 안 제29조제4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표현이 상이한바, 법체계를 고려할 때 표현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라는 표현이 정의 없이 활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6조)** 제정안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취지로 토막광고를 프로그램 외 광고로 포섭하여 토막광고의 정의를 삭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토막광고’ 표현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제정안이 방송광고를 시청각미디어광고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방송광고 관련 법체계 전반의 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최근 뉴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음주·흡연·마약 장면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안 제36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광고 금지규정에 '음주·흡연·마약·사행행위 등의 조장·미화 및 과도한 묘사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KBS: 신중검토)** 「방송법」에 따른 7개의 방송광고 종류를 3개 유형으로 재분류하더라도, 광고총량·횟수·시간제한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없이는 광고 규제 완화가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미디어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이 필요함.

- 안 제36조가 방송광고 유형을 7가지에서 3가지로 단순화하였음에도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7조에 따라 협찬의 종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

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광고 규제와 같이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TV조선: 신중검토)** 협찬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거나 협찬 운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제작 재원이 더욱 축소되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OTT사업자와의 규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찬 관련 세부기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방송법」 제9조의2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으로서 자본금, 방송설비, 사무실 등 방송채널사용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사업 수행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방송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정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안 제37조제3항은 협찬이 금지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합법적 협찬과 위법한 협찬의 객관적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제작현장의 창의적 기획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안 제38조제1항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외주제작사의 협찬 사실까지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협찬 내역까지 추적하여 사후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66]에 부합하지 않고, 콘텐츠 공급망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한국TV홈쇼핑협회: 수정 수용)** 제정안은 상품소개판매채널을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을 하려는 경우 승인을 요구하는데, 비실시간인 데이터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도 승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삼성TV플러스: 신중검토)** 수신료나 구독료가 아닌 광고료만을 재원으로 하는 FAST서비스에 대하여는 유연한 광고 정책이 필요함에도 서비스 특성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광고 규제는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66) OTT사업자는 수많은 외주제작사로부터 기 제작된 영화, 드라마 등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2차 유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8. 제4장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2): 보편적 시청권, 이용자제작콘텐츠서비스사업자, 승인취소, 과징금 등(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3조 및 제44조는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와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5조 및 제46조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승인취소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 략)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보편적 시청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②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권을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제40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중계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제공수단(이하 “보편적 제공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제공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공내용의 기록·보존)**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일지에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제공내용(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공결과를 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공(재송신은 제외한다)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 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일지의 기록 및 제공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및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신고) 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이하 “공유플랫폼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수취하는 수입 및 공유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관련 자료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공유플랫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책무)** 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공유플랫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제작·제공하는 콘텐츠에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현물이나 금전적 협찬 또는 후원을 받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식별 가능하도록 콘텐츠 내에 표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과장의 방법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홍보하거나 구매의 유도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⑤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콘텐츠의 제공 중단 명령을 받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승인취소 및 업무정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 략)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생 략)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31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를 휴업한 경우
6. ~ 8의2. (생 략)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13. (생 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미디어통신위	**제46조(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가 해당 서비스의 시청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방송법」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승계한 것이고, 안 제42조는 「방송법」 제83조에 따른 방송결과 기록·보존의무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임.

○ 안 제43조 및 제44조는 「방송법」의 규율 범위 밖에 있던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종전 법체계에 없던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3조에 따라 대규모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현행법상 PP 및 제정안에 따른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상품소개판매채널사업자는 제외)와 같이 신고사업자로 관리되는데, 허가·승인이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4조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책무로서 심의규정 준수의무, 협찬·광고 표시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그 취지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하여는

2026년 9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동 제정안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3조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중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플랫폼으로부터의 수입 등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무 및 자료제출의무의 이행이 확보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자료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시청각미디어공유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이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출 및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비공개·보안 절차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8조의 역외적용 규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크리에이터에 대하여도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는바, 현실적으로 해외에 소재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익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안 제44조제3항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협찬표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안 제38조에 따른 일반적 협찬고지 의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안 제106조제1항제15호는 안 제38조의 위반행위를, 같은 항 제18호는 제44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넷째**, 「방송법」 제18조제5항과 같이, 승인이 취소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연장 명령[67]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음.

○ 「방송법」은 승인이 취소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 사업자 승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의 알 권리 및 시청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

67)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17조(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등)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가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것임.

○ 그런데, 동 제정안은 이러한 방송연장 명령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 제45조에 따라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사업자가 승인 취소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 상품소개판매채널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즉시 방송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방송과 상거래가 결합된 상품소개판매채널의 방송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단순히 시청권 침해를 넘어 상품의 재고나 대금 정산 문제, 상품 구매자의 반품·환불 불능에 따른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안 제45조에 따른 승인 취소 또는 재승인 거부 시에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방송연장 명령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섯째**, 안 제46조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19조는 방송업무의 정지가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대체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해당 사업의 매출액 3%'로 조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46조의 적용대상인 ‘승인을 요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정안 체계상 상품소개판매채널사업자로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정안의 실질은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매출액의 3%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4·2025년 기준 홈쇼핑PP 중 연간 홈쇼핑방송매출액 최저치조차 1,0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과징금 상한은 기존 대비 최소 30배에서 최대 150배 이상 대폭 상향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 2024·2025년 홈쇼핑PP의 홈쇼핑방송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자명	홈쇼핑방송매출액	
	2024년	2025년
㈜공영홈쇼핑	124,855	130,397
㈜더블유쇼핑	104,721	104,883
㈜신세계라이브쇼핑	192,235	197,835
㈜씨제이이엔엠	459,724	464,486
㈜엔에스쇼핑	357,882	355,157
㈜우리홈쇼핑	519,238	509,828
㈜지에스리테일	387,392	418,222
㈜티알엔	122,454	132,042
㈜현대홈쇼핑	581,034	559,970
㈜홈앤쇼핑	212,365	179,893
에스케이스토아㈜	158,653	145,201
㈜케이티알파	190,000	148,022

자료: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6.)

○ 과징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상품소개판매채널의 매출액 현황을 고려할 때 상한이 일시에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사업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39조)** 중계방송권(자)-중계권(자) 및 보편적 방송수단-보편적 제공수단 표현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3조·제44조)** 안 제44조제2항이 안 제43조제2항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하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44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함.

○ **(안 제44조)** 안 제1항에서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기준'은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심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항에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제공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콘텐츠 제공 중단 명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5항에서 과태료 근거로 제105조로 인용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안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45조)** 안 제1항제4호에서 시정명령 근거로 제96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안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KBS: 신중검토)** 안 제39조와 제41조 등에 공공성을 가지는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제공수단에 공영방송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안 제39조제2항의 차별 없는 제공 의무만으로는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OTT가 중계권을 획득하고 중계권료를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계권 구매 단계부터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IPTV법」 제21조제1항이 PP 채널의 편성 기회 축소 및 협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 중 IPTV사업자에 한정하여 직접사용채널 운용 금지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관련 핵심 조항인 안 제43조와 제44조에 명백한 입법 오류가 존재하는 점은 충분한 법제적 검토 없이 제정안이 발의된 것임을 보여줌.

- 안 제38조는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일괄적인 협찬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안 제44조에서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만을 겨냥한 협찬 표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하며, 이중 처벌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음.

- 안 제43조는 대규모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데, 사적 계약의 영역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입보다는 일반에 공개되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안 제44조제3항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집행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부처 간 중복 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9. **제5장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허가·승인, 지역사업권, 기술기준, 기술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채널 구성, 재송신 등(제47조부터 제60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5장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관련 제도에 관한 것으로,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사업 허가·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는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의 이용약관·편성·재송신 규제를 정하고 있음.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47조(허가·승인 등)** ①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플랫폼서비스(이하 “설비보유 플랫폼서비스”라 한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②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무선국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⑦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 ⑫ (생 략)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1. 시청각미디어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재정 및 기술능력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⑤ 삭제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얻은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	**제11조(변경허가)** ① 제4	**제48조(변경허가·변경승**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변경신고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의 양도	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3. 사업권역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1. 대표자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3. 법인명 또는 상호	2.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②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1.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2.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	**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9조(재허가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7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1.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평가 결과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와 그 이행 여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 및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4.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5. 시청각미디어 및 관련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계획의 이행 여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생 략)		
6.·7. (생 략)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6. 허가 당시 부과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 심사기준,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으로 정한다.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에서 정하는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4. 이 법에서 정하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5.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7.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용약관 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2.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생 략)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도록 할 수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다.		있다.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권역)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지역사업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비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지역사업권의 설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설비 보유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기술기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비 보유 플랫폼 서비스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②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		③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술기준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공동체라디오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같다) 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		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		② 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기준·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에 따라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플랫폼서비스의 이용약관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 중 유료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 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 플랫폼서비스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2.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결합하여 묶음으로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요금	제공하는 상품의 요금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되었을 것
⑥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	제58조(채널의 구성과 운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용)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특정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시청각미디어 채널서비스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③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구역별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정보 및 시청각미디어 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및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⑤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	**제59조(재송신)**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의 채널(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시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프로그램의 편성,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사업구역 안에 해당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사업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채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사업자별로 지정·고시하는 1개 채널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		③ 제1항에 따른 동시재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에 따른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사업자의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2.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무선국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지상파방송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방송구역 외에서 해당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및 제2항에 따른 동시 재송신은 제외한다)
⑤ 삭제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외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외국에 설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를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를 국내에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일시적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으로 중계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시청각미디어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시청각미디어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의 존재 여부 및 그들이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채널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심의규정 및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 채널서비스사업자는 재송신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 채널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

「방송법」	「IPTV법」	제 정 법 률 안
위반되는 때		스의 내용이 제3항을 위반한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3.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의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는 「방송법」 제9조의3, 제9조의4,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등 유료방송사업자인 SO·위성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승계하면서 「IPTV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를 포섭하고 있는데, SO·위성방송·IPTV를 유료방송사업자로서 하나의 사업자군으로 보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47조제2항은 「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정의를 활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데, 위성방송이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포섭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안 제2조제6호가목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68]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

68)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함.

○ 해당 정의는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를 갖춘 ‘종합유선방송(SO)’ 및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포섭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여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의 경우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가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처럼 법률상 정의 조항과 허가 등 실체적 조항 간 개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위 및 규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위성방송을 명확히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전기통신회선설비 외 설비로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추가 열거하는 등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8조제2항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방미통위의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는데, SO·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이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제도를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미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IPTV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하여, IPTV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방미통위의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규제 공백이 존재해왔음.

○ 특히, 현재 IPTV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69]을 고려할 때, IPTV사업자의 경영권 변동을 공적 검증 절차 없이 방치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여론 독과점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SO·위성방송·IPTV사업자를 모두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섭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방송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 **셋째**, 안 제49조가 재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허가가 유효

69) 「202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방미통위, 2025.12.)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 중 IPTV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8.97%에 달함.

한 것으로 간주하는 최근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사항을 누락하였는바,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6년 4월과 5월, 재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방송법」 및 「IPTV법」이 개정[70]된 바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 본 법률안 제정 이후에도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재허가가 불가능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 제정안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55조는 허가·승인 심사항목 및 심사 결과 공표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방송법」 제10조를 기계적으로 승계하고 있어 인용 조문에 오류가 있고,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 허가·승인 심사항목 등은 안 제47조제7항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함.

○ **다섯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70) 「방송법」(법률 제21572호, 2026.4.21.시행), 「IPTV법」(법률 제21677호, 2026.5.시행)

○ **(안 제48조)** 제2항 중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분은 서비스군별로 규정을 분리하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할 때 제6장(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으로 이동이 필요함.

○ **(안 제53조)** 제1항 중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의무 부분은 서비스군별로 규정을 분리하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할 때 제3장(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으로 이동이 필요함.

○ **(안 제57조)** 제2항제2호에서 이용약관 관련 금지행위 근거로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금지행위는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8조·제60조)**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 및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라는 표현이 정의 없이 활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9조)**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 및 ‘지상파방송플랫폼서비스’라는 표현이 정의 없이 활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KBS: 신중검토)** OTT, FAST에 공영방송 콘텐츠의 적정 위치 접근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OTT 등 설비 미보유 플랫폼에 대하여 KBS 콘텐츠 재송신 또는 접근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플랫폼사업자의 사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5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최소채널상품 승인제를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채널, 공익채널 등 의무편성 규제는 상품 경쟁력과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10. 제6장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 신고, 투명성 확보,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6장은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것으로, 안 61조부터 제63조까지는 신고제도와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법」 및 「IPTV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에 새로 도입되고 있음.

제 정 법 률 안
제61조(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신고) ①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사업 등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등) ①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배치, 추천, 중개, 공유를 위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의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콘텐츠가 추천·중개·공유되는 방식에 관하여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의 내용, 수립 절차, 공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①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가 추천·중개·공유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2. 부당하게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3.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독려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공중보건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5.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6.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②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에 대하여는 삭제하거나 전체 이용자 또는 청소년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3.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노출·유통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받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③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및 삭제 조치, 이용자 보호 및 시청자 불만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불법 또는 유해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내역을 매년 1회 이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제11장(벌칙)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는 OTT로 일컬어지는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방송 관계법 체계에서 포섭되지 않았던 OTT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방송-OTT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핵심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

○ 안 제61조에 따라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신고사업자로 관리되며, 안 제62조 및 제63조는 알고리즘과 불법 콘텐츠 관련 규제를 정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61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71]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안 제61조제1항은 방미통위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사업 등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71) 안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르면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제공플랫폼서비스)’와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공유플랫폼서비스)’로 구분됨.

○ 그러나 안 제47조제1항에서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로 약칭한 것과 달리, 제정안 그 외 조문에서 ‘플랫폼서비스’ 또는 ‘플랫폼서비스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약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61조는 ‘플랫폼서비스사업’ 표현을 사용하여 법 해석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조문 중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사업 등’이라는 표현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예시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임.

○ 이처럼 신고 대상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법적 불안정성과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61조제1항의 문언을 법률상 정의 조항과 일치시킴으로써 문언상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고제도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61조에 따른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간 중복을 해소하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TT 등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

항[72]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바, 제정안에 따른 신고의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음.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정안 제61조에 따른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각각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61조제2항은 신고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요건 확인을 거쳐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함.

○ 안 제61조제1항 단서와 같이 제정안의 신고를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사업자들이 제정안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는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사업자 부담 완화 및 행정상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서에 따른 신고 간주의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규제 우회로 인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 형해화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7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셋째**, 안 제62조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세우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관련 사항이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의 배치·추천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플랫폼의 서비스 차별화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서 영업비밀[73]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및 공개의무를 부과할 경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보안상 비공개 사유, 공개범위 등 예외 사유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63조에 따른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관련 규정 신설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유플랫폼서비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7 등을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과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73)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안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불법 콘텐츠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제1호 및 제2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0조제2항[74],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제250조[75], 제6호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136조[76] 등 이미 개별 법률을 통하여

---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5)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6)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재 및 유통 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63조제1항제3호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독려하는 콘텐츠를 불법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의 의미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방미통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 **다섯째**, 제정안은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콘텐츠 삭제·차단 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 안 제63조제6항은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하여 삭제 또는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안 제11장(벌칙)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인 안 제97조,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인 안 제98조 및 벌칙 근거 조항인 제11장(제103조, 제104조 등) 어디에도 안 제63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실체법상 의무조항과 제재 조항 간 연계가 미비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제재조치의 수준에 관한 논의를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통해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그 밖에 제정안 제63조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삭제하거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콘텐츠 범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을 고려할 때 ‘제3항’을 ‘제4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안 제62조에 따른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공개의무가 공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 수준과 예외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3조에 따라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을 플랫폼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상시적 사적 검열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안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규율하려는 행위는 저작권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 행정조치 체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중복·충돌되어 수범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히, 한-EU 및 한-미 FTA에 따라 개정한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77]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

---

77)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

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기준도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중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불법 콘텐츠 중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안 제62조는 영업비밀이나 보안 등에 대한 예외 없이 사업자의 핵심 기술자산인 알고리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개 범위나 영업비밀에 대한 예외, 비공개 사유,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3조에 따른 제도는 ①사업자가 제재 회피를 위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표현과 유통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②불법성이 명백하고 긴급한 위해가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와 (합법적이나) 유해한 콘텐츠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규율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으며, ③기존 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체계와 중복되어 법령간 체계 정합성을 저해하고 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삼성TV플러스: 신중검토)** 알고리즘 추천·배치 시스템은 플랫폼서비스의 단순 부가 기능이 아닌 이용자 경험, 콘텐츠 발견 가능성, 시청 지속성, 서비스 차별화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자산인데,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정보의 공개 의무는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11. 제7장 시청자의 권익증진: 책무, 시청자위원회, 사업자의 의무, 장애인 시청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제64조부터 제73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7장은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장으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시청자권익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관련 기구 및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시청자 보호업무평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64조(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책무)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시청자의 권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청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시청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	**제6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66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보도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상품광고판매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1.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5.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제87조제1	**제6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의**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무) ①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6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6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제68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운영과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시청자 보호업무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의 기준과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재난정보의 전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재난정보의 전파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정보를 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⑦ (생 략)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	**제71조(장애인 시청지원)**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등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가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 및 시청각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시청자 역량강화 및 시청각미디어 교육의 지원) ① 정부는 시청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에 대한 시청각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청각미디어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청각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둔다.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제73조(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및 시청자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시청각미디어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는 「방송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승계하면서 그 대상을 방송사업자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유형과 관계 없이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69조는 「방송법」 제31조[78]에 따른 방송평가를 대체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79]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와 유사한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방송평가를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로 전환할 경우 평가의 대상·범위 및 목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78)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7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방송법」 제31조[80]에 따라 방미통위는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음.

- 방미통위규칙에 따라 매년 방송평가결과를 연간 단위로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이 가능함.[81]

○ 반면, 제정안 제69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는 방미통위가 매년 수립한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 공개하는 평가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82]

---

80)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8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조(평가대상 기간) ① 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8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참고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21개사[83], 부가통신사업자 26개사[84]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속하며,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음.

○ 이처럼 두 평가 제도는 평가의 대상·범위 및 목적이 상이한바, 평가 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재허가·재승인 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공적 책무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과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에 관한 사항이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운영에 관한 평가 역시 이용자 보호와 불만처리 실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변화된 평가 제도 하에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존 방송평가 요소의 유지·보완 여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70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재난정보 전파에

83)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84) 앱마켓 4개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방송 관련 방송사업자의 의무 및 방미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권한 등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제정안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셋째**, 안 제71조는 장애인의 시청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군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9조 및 제35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71조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73조는 「방송법」 제90조의2와 같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85]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DD210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DD2101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514)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65조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미심위, 시청자위원회 등과 역할이 중첩되어 중복 규제를 유발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청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안 제68조에 따른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0조에 따른 재난방송 제작지원 의무화가 필요하며, 신규 미디어사업자도 재난정보 전파와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데,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채널을 임대하여 상품을 구성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채널·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제작 권한이 없으므로 시청자위원회 권한·직무 행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며,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설치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음.

12. **제8장 공정경쟁의 촉진**: 경쟁상황 평가,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등(제74조부터 제86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8장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74조 및 제75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 관련 사항을 정하고, 안 제77조는 각종 금지행위를 정하며,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에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74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이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라고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 평가는 제7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	**제75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7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공급)**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	**제77조(금지행위)**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시청자미디어채널의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2.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외주제작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또는 권리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청 또는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5.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행위	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상품광고판매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광고판매채널에 편성을 조건으로 상품광고판매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을 위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항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따른 조사계획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1항과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7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78조(손해배상)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7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방송사업자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4. 전광판방송사업자	
5. 전송망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8. 외주제작사	3. 외주제작사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⑨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조정의 개시) ①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조정의 개시)** ① 제79조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채널 및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송출 또는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구역과 관련된 분쟁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4. 중계시청각미디어서비스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	**제81조(합의 권고)**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0조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8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1. 제8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80조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80조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수 있다.
제91조의4(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조정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조정의 효력 등)** ① 제83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제83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제85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 제81조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당사자가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제84조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	**제86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1. 제39조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59조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80조 및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74조 및 제75조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른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평가대상을 방송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음.

○ 안 제7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방미통위가 사업장 출입조사, 물건의 제출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목적과 요건 하에서만 행정조사가 허용되고 있었다는 점[86]에서 「전기통신사업법」[87]과 같이 포괄적 목적의 행정조사 근거를

---

86)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87)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안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는 「방송법」 제91조부터 제91조의7과 거의 일치하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74조 및 제75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방송·통신 및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관련 자료제출 대상을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서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OTT)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미디어 이용행태가 방송의 일방적 수용에서 OTT를 통한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선택적 소비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 내 경쟁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75조제3항에 따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글로벌 OTT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을 하더라도 실질적 자료 확보 및 강제 수단이 부족하여 집행가능성이 저해될 경우, 경쟁상황 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둘째**, 안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의미가 모호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안 제77조제1항제4호는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 거부의 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인지(B2B), 시청자 또는 이용자인지(B2C)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한편, 해당 규정이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를 제재하려는 취지라면, 시청자 대상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 거부를 제재하면서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는 안 제97조제1항제1호와 중복 및 충돌되는 측면도 있음.

○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지행위의 요건을 시정명령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법률 내 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7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출연방해 관련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에 따른 출연방해 관련 금지행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인물의 매체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이나,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엄격한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적 책무가 부과되는 전통적 방송과 달리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개별 창작자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바, 상대적으로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요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서비스 특성을 간과하고 전통적인 방송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출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자율적인 제작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7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에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78조는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지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부여하고 있는 점(입증책임 전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는데,[88]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 성립요건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민사책임의 기본 원칙임.

- 다만, 특정 전문분야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음.[89]

---

88)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9)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①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금지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여 일반인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분석하기 어려운지, ②법적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분쟁을 수행하기 곤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79조)** ‘방송’에 관한 분쟁으로 표현된 부분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0조)** 제1항에서 분쟁조정 당사자를 ‘제79조에 규정된 자’로 표현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7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당사자’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종전 ‘중계방송권’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중계권’ 및 ‘중계시청각미디어서비스권’ 표현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제40조로 오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안 제86조)** ‘국민관심행사 등’ 대신 안 제39조에 따른 약칭인 ‘국민관심행사등’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지상파방송 채널’이라는 표현이 정의 없이 활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안 79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트 분쟁조정위원회와 기능상 중복될 소지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신중검토)** 안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중복규제로 인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법체계 일관성을 위하여 삭제가 필요함.

- 안 제77조제2항은 「방송법」과 달리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고 있는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려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함.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신중검토)** 안 제76조는 콘텐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든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자가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차별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76조는 콘텐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든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플랫폼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 대우하는 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3. **제9장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지원**: 제작·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협회 등(제87조부터 제96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9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 사항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램 제작,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95조 및 제96조는 진흥원과 진흥협회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기술, 문화 및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시책 기본방향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 기반 시설 조성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 기술개발, 표준화 및 연구기반 조성 4.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과 수출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7.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활용 제고 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 9. 중소 규모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 10.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국제협력 지원 11.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88조(시청각프로그램 제작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의 창업 지원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지원 3. 창의적, 실험적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유통 지원 4. 공공·공익적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유통 지원 ② 그 밖에 시청각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확산 및 실용화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산학협동 촉진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5.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술개발 및 표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책 분석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 관련 유망 사업 발굴 및 확산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국내외 유통 관련 마케팅·홍보 지원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유통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1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중·장기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수급전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②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2조(세제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3조(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진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1. 공동제작, 송출, 유통시설 구축 2.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3. 경영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③ 그 밖에 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4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시청각미디어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5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① 시청각미디어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청각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 지원 2. 시청각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3. 시청각미디어 관련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4. 시청각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시청각미디어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 7. 시청각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 통계 작성,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 8. 시청각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 간 협력 증진, 자율규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운영,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87조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방미통위가 매 3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 체계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세제 지원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90]에 따라 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제특례나 세제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방미통위가 수립하는 행정계획 내에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

---

90)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87조)** 안 제2항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며 이를 ‘기본계획’으로 약칭하고 있음에도, 안 제4항은 ‘제1항의 기본계획’으로, 안 제5항은 ‘제2항의 기본계획’으로 인용하여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므로, 약칭인 ‘기본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5조)**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9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DD210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DD2101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514)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재정경제부: 신중검토)** 조세제도는 매년 경제·재정 여건, 과세 형평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소관하는 사항으로,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므로 삭제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안 제95조는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존 영상콘텐츠 진흥기관의 기능과 완전히 중복되는 기관인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고 정부조직을 효율화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안 제96조에 따른 협회 설립 필요성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미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자 단위별로 진흥과 협력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수정 수용)** 제정안에 따른 산업 진흥 방안이 기존 「방송법」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시장영역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육성 및 정부 재정지원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14. **제10장 보칙**: 시정명령, 제재조치, 권한 위임·위탁 등(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0장은 보칙으로서 제1장～제9장에 따른 실체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그 밖에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조치와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99조(시정명령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시정명령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단,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 또는 신고 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서비스 사업자·지상파방송서비스 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제재조치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14조에 따른 심의규정 및 제37조제2항과 제3항의 협찬, 제38조제3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또는 해당 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1.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또는 해당 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책임자·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또는 해당 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3.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출연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 음란·퇴폐 및 폭력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경우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	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는 제1항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및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송출·전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상품소개판매채널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판매채널 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9조(청문)**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1. 제23조,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2. 제24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3. 제6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 재허가·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 재허가·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제10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제95조의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79조제3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01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0장의 보칙규정을 통하여 제정안 내 실체규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수수료나 권한의 위임·위탁과 같이 행정상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있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98조제4항은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제3항제4호로 신설하도록 이동하는 것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98조제4항제3호는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기타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불법콘텐츠를 유통한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법콘텐츠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미통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음.

○ **셋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98조제1항·제5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를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책임자’로 오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8조제2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를 ‘서비스 사업자’로 오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8조제6항)** 안 제14조에서 ‘심의규정’을 약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항 언급 없이 바로 인용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안 제101조)** 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언은 삭제가 필요함.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안 제98조제4항제2호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저작권 침해는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닌 사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28조[92]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저작권법」에서 민사·형사·행정제재를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제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호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

92)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부과 사유

15. 제11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과징금(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1장은 벌칙에 관한 것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는 제103조 및 제104조, 양벌 규정을 정하는 제105조, 과태료와 과징금 근거를 정하는 제106조 및 제107조로 구성됨.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한 자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1조·제47조 또는 제23조·제34조·제4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20조·제31조·제47조 또는 제23조·제34조·제4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3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1조제1항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의 성명을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광고를 한 자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3. 제3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시청각미디어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프로그램 내 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4. 제36조제7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 내 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17.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및 시청각미디어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8.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9.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0. 제53조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1. 제56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22. 제57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한 자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3.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24.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	25.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26.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2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28. 제59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59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9. 외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가.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나.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 제60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	30.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3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32.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33.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34.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3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6. 제7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37.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8.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39. 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송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40. 제98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7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과·징수할 수 있다.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③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방송법」	제 정 법 률 안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는 제정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과태료·과징금 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재 수단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병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칙의 요건은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고, 안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요건은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임.

- 벌칙의 경우 은폐·축소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로 요하고 있으나, 두 조항 모두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이라는 동일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음.

○ 즉,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칙)과 행정벌(과태료)이 중복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지는 않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그 밖에 제정안 중 체계 정합성이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04조)** 제1항제9호에서 ‘신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1조제1항 단서는 승인사업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06조제1항제3호)**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과 같이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로 수정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6조제1항제10호)** 「방송법」과 같이 ‘편성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정안에 따른 명칭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06조제1항제18호)** 제정안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체계를 고려할 때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06조제1항)** 제24호와 제26호 모두 안 제58조를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두 규정을 통합 규정하는 것이 효율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안 제106조제2항)** ‘부과권자’ 약칭이 이후에 등장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7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 오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16.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경과조치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 다른 법률(「방송법」·「IPTV법」)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법 률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방송법」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받은 허가·승인·등록·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역사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따라 종전 사업구역에서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방송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설정·변경·취소, 그 밖에 사업구역에 관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업권의 설정·변경·취소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활권 변화, 행정구역 개편, 전송망 구성 등 제51조제2항에 따른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종전 사업구역을 같은 항에 따른 사업구역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

제 정 법 률 안
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정부의 회계연도 및 현행 방송평가 대상기간에 맞추어 시행일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사업자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인 분담금 징수대상의 재편과 함께, 방발기금 지출을 통한 지원 대상이 방송사업자 외 사업자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수반할 여지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및 기금운용계획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연중 시행으로 인한 기금 분담금 산정·징수 및 지출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회계연도 개시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되어 재허가·재승인의 필수 요소로 반영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평가가 폐지되고 안 제69조에 따른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가 이를 대체하게 됨.

○ 제정안이 연중 시행될 경우 방송평가 대상기간의 분절 및 평가

데이터의 누락이 발생하여 방송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일을 1월 1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송법」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소유규제에도 불구하고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된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방송법」 제·개정 당시 법률 제9786호 부칙 제3조제2항[93], 법률 제6139호 부칙 제9조제3항[94], 법률 제4263호 부칙 제3조[95]는 법률 제·개정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소유규제로 인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해왔음.

○ 따라서 「방송법」을 폐지하려는 제정안이 현행법상 소유제한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 폐지 및 제정 이후에도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부칙에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93)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94)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95) **③(방송법인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송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의 소유한도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셋째**, 「방송법」·「IPTV 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거나 '방송'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9월 기준 총 50개 이상 법률에서 「방송법」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 특정 방송사업자군(지상파, SO, 전광판방송사업자 등)이나 방송의 정의를 활용하여 규제·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서 방송(사업자)을 단순히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 치환할 경우 개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동 제정안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순히 방송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치환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는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96] 제정안 체계에 맞추어 '방송사업자' 표현을 수정할 필요

96)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

가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또한 EBS의 업무로서 텔레비전·라디오·위성 교육방송의 실시를 규정[97]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